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 대학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2020년]

2020. 7.



동남보건대학교
DONGNAM HEALTH UNIVERSITY

목 차

제 I 장	자체평가의 개요	1
1.	관련근거	1
2.	자체평가의 목적 및 추진방향	1
제 II 장	자체평가 추진체계	2
1.	조직구성 및 역할	2
2.	자체평가의 내용	4
3.	자체평가의 방법	6
4.	자체평가의 절차	6
제 III 장	자체평가 결과	7
1.	평가결과 총괄	7
2.	기준별 세부평가결과	8
제 IV 장	자체평가 활용계획	46
1.	우수사례 및 개선·보완사항	46
2.	결과활용 계획	46

제 I 장 자체평가의 개요

1. 관련근거

-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평가)

제11조의2 (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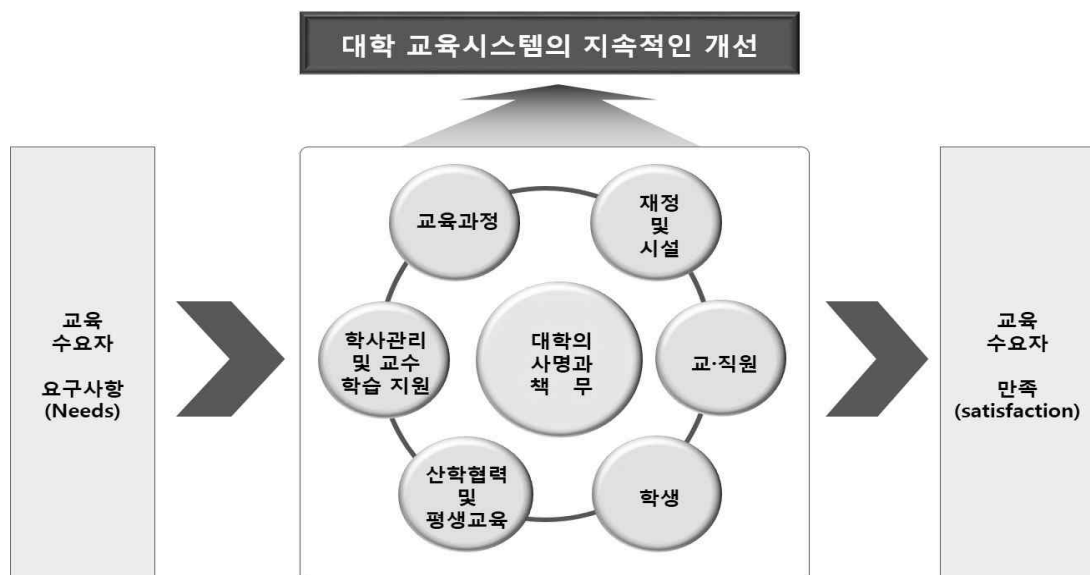
- 2) 「학칙」 제19장 자체평가

제85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3) 대학 규정집 「자체평가규정」

2. 자체평가의 목적 및 추진방향

- 1)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 수립 등에 활용
- 2) 자체평가를 통하여 대학의 구성원들과 함께 대학의 우수 부분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교육품질 향상을 위한 대학의 교육역량 향상 및 개선 방향을 수립하는 기반을 마련
- 3) 대학의 강점과 약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이해하여, 자체평가 수행으로 대학 스스로 직업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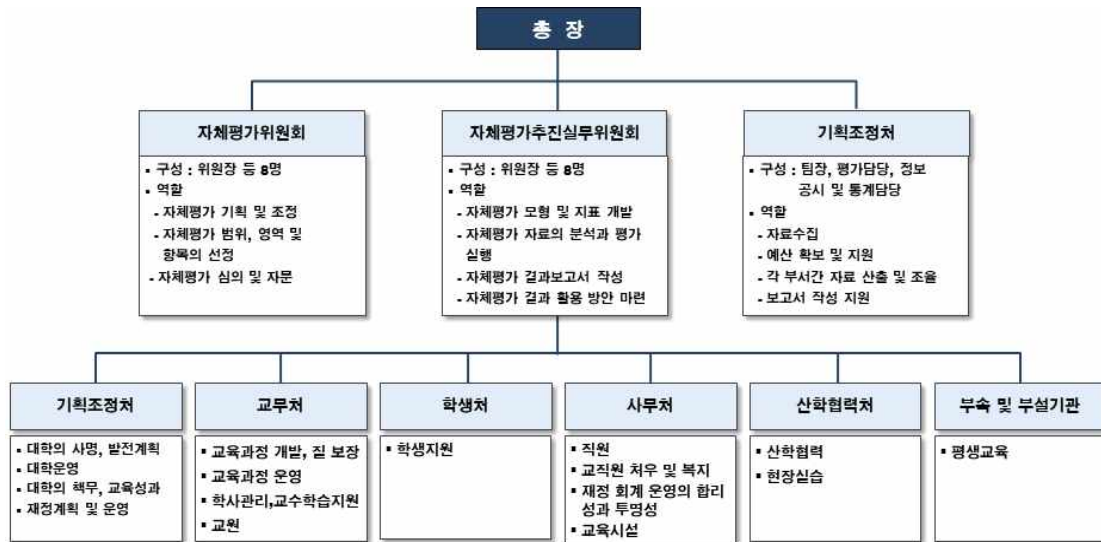


[그림 I-1] 자체평가의 목적

제 II 장 자체평가 추진체계

1. 조직구성 및 역할

1) 자체평가 추진체계



2) 자체평가위원회 및 자체평가실무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직위(소속)	성 명	비고
평가인증담당자(ALO)		기획조정처장	김○○	총괄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처장	김○○	
	위 원	교무처장	이○○	
	위 원	학생처장	조○○	
	위 원	사무처장	정○○	
	위 원	산학협력처장	황 ○	
	위 원	학술정보관장	신○○	
	위 원	평생교육원장	왕○○	
	위 원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	정○○	외부위원
	간 사	전략운영팀	김○○	
자체평가추진실무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처장	김○○	
	위 원	전략기획팀장	김○○	
	위 원	전략기획팀	성○○	
	위 원	전략기획팀	홍○○	
	위 원	전략기획팀	이○○	
	위 원	전략운영팀장	이○○	
	위 원	총무팀장	이○○	
	위 원	학사운영팀장	한○○	
	간 사	전략운영팀	김○○	

3) 자체평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여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 방안 모색
-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
 - 대학자체평가 기획 및 조정
 - 대학자체평가 범위, 영역 및 항목의 선정
 - 대학자체평가 실시
 - 대학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4) 자체평가추진실무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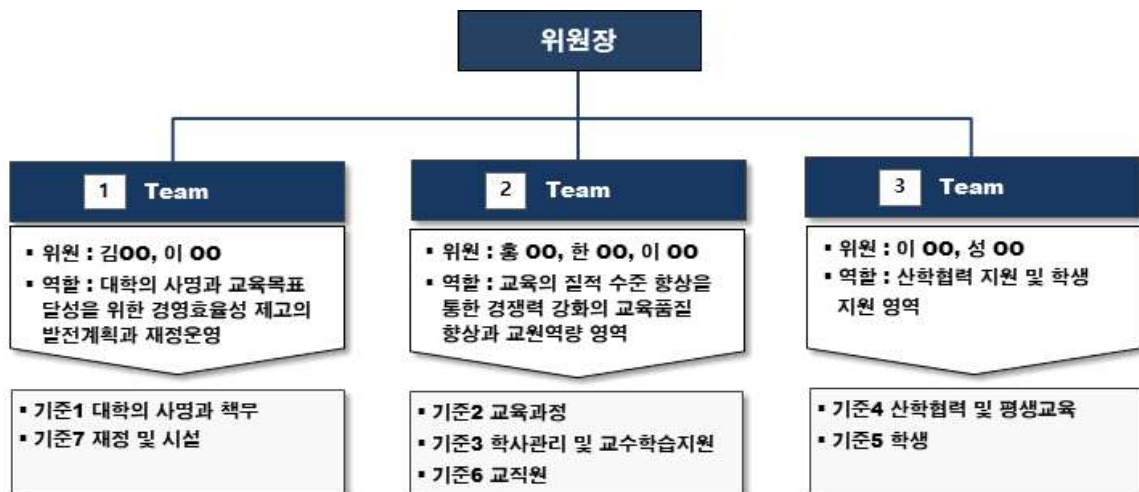
- 행정부서 팀장 그리고 자체평가실무교육을 다녀온 교원으로 구성하여 대학자체평가 제반 과정 및 결과 활용이 대학 전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를 담당함
-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
 - 대학자체평가 모형 및 지표 개발
 - 대학자체평가 자료의 분석과 평가 실행
 - 대학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대학자체평가 결과 활용 방안 마련
 - 대학자체평가를 위해 타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자체평가추진실무위원회의 기준별 업무분장

- 기준별 업무분장

기준	평가위원	기준	평가위원
기준1 대학의 사명과 책무	전략기획팀장 김○○	기준5 학생	전략기획팀 성○○
기준2 교육과정	전략기획팀 홍○○	기준6 교·직원	총무팀장 이○○
기준3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지원	학사운영팀장 한○○	기준7 재정 및 시설	전략운영팀장 이○○
기준4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전략기획팀 이○○	평가 총괄(ALO)	기획조정처장 김○○

- 영역별 연계성을 고려한 3개 팀구성



2. 자체평가의 내용

1) 자체평가 평가요소 및 평가 방법

기준	세부기준	평가요소	평가방법	
			정량지표	관련 정보공시
1.대학의 사명 과 책무	1.1 대학의 사명 및 발전계획	1.1.1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	-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1.1.2 대학발전계획	-	11-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2 대학 운영	1.2.1 대학의 조직 및 운 영	-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14-가. 정관
		1.2.2 의사결정구조	-	-
	1.3 대학의 책무 및 교육성과	1.3.1 대학의 책무	-	10-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12-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1.3.2 교육품질 개선	-	14-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1.3.3 교육만족도	-	-
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개발 및 질 보장	2.1.1 교육과정 개발 및 질 보장	-	-
	2.2 교육과정 운영	2.2.1 현장중심 전공교육	전공강좌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
		2.2.2 직업기초, 기초학습 및 교양교육	-	-
3. 학사관리 및 교수 학습 지원	3.1 학사관리	3.1.1 학생선발	-	3-가. 모집요강(편입학 포함) 4-다. 신입생 충원 현황
		3.1.2 학사 및 수업관리	-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10-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3.1.3 재학생 충원	[필수] 재학생 충원율	4-라. 학생 충원 현황 (편입학 포함) 4-마. 재적 학생 현황
		3.1.4 학업 성취도 평가	성적분포 비율	2-가.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3.2 교수학습 지원	3.2.1 교수학습 지원 및 평가	-	-
4. 산학협력 및 평생 교육	4.1 산학협력	4.1.1 산학협력활동	-	12-자.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12-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12-카.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12-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12-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4.1.2 취·창업 지원	-	12-하. 창업 현황 및 창업교육 등 지원 현황
		4.1.3 취업률	건강보험 및 국세DB 연계 취업률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4.2 현장실습	4.2.1 현장실습 지원	-	12-카.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4.3 평생교육	4.3.1 평생교육 운영	-	-
5. 학생	5.1 학생지원	5.1.1 학생활동 및 안전관 리	-	14-파. 안전관리 현황

기준	세부기준	평가요소	평가방법	
			정량지표	관련 정보공시
6. 교 · 직원		5.1.2 학생상담과 진로	-	-
		5.1.3 학생복지	[필수] 장학금 지급비율	12-다. 장학금 수혜 현황
		5.1.4 도서관 지원	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5.1.5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 지원	-	14-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6.1 교원	6.1.1 교원 인사관리	-	-
		6.1.2 전임교원의 확보	[필수] 전임교원 확보율	6-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6.1.3 연구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7-가.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 12-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6.1.4 교원 역량 개발	-	-
	6.2. 직원	6.2.1 직원 인사관리	-	14-사. 직원 현황
		6.2.2 직원 역량 개발	-	-
	6.3 교 · 직원 처우 및 복지	6.3.1 교 · 직원 처우 및 복지	등록금 대비 교원 인건비 비율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등록금 대비 직원 인건비 비율	
7.재정 및 시설	7.1 재정계획 및 운영	7.1.1 연간 예산 수립 및 결산	-	8-가.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 8-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8-라. 예·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8-마.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8-사. 적립금 현황 8-아. 기부금 현황 8-자.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8-차. 등록금 현황 9-가. 등록금 산정근거
		7.1.2 대학재정 확보	[필수] 교육비 환원율	8-가.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 8-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8-사. 적립금 현황 8-아. 기부금 현황 9-가. 등록금 산정근거 9-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14-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7.2 재정 · 회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7.2.1 재정 · 회계 운영의 적절성	-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7.3 교육시설	7.3.1 교육시설의 확보 및 유지	교사확보율	14-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7.3.2 정보보안 체계	-	14-파. 안전관리 현황

3. 자체평가의 방법

- 1)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서 제시한 기관평가인증제 편람을 바탕으로 기관평가 인증에 필요한 각 평가요소의 인증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학의 교육역량을 객관적인 자체평가를 통하여 충족(Y)/보완(C)/미충족(N) 여부로 판단함
- 2) 모든 평가방법은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우선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일부 정성적 평가요소에 정확성, 타당성,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 3) 정성평가와 정량적 정성평가 방법의 적용 비율 7.5:2.5 구성 (인증원 평가인증 기준)
 - 정성평가 요소(□) - 47개 (전체 평가요소의 75%)
 - 정량적 정성평가 요소(▲) - 15개 (전체 평가요소의 25%)
 - 필수평가요소 - 4개 (정량적 정성평가방법 적용)

4. 자체평가의 절차

- 1) 우리 대학은 자체평가를 위한 절차로 기본계획 수립, 항목개발 및 선정, 안내 및 자료수집, 평가자료 검증 및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심의 및 자문, 평가결과 확정, 평가인증 심사 그리고 결과의 활용 등과 같이 9단계를 통하여 진행함
- 2) 자체평가 절차

구분	주요 사항
① 기본계획 수립	· 목적, 추진방향 설정 ·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자체평가실무위원회, 전략기획팀) · 추진절차 및 일정 수립
② 항목개발 및 선정	· 평가지표 개발 및 선정 · 평가기준 및 방법 확정
③ 안내 및 수집자료	· 부서 설명회(평가안내) · 부서별 평가자료 입력 및 근거자료 확인
④ 평가자료 검증 및 분석	· 자체평가 결과 검증 · 증빙(근거)자료 검토
⑤ 결과보고서 작성	· 영역별 결과보고서 작성 · 평가결과 비교 및 분석 및 영역별 판정 조율회의 · 평가결과 보완사항 확인
⑥ 심의 및 자문	· 자체평가 위원회 검토 · 평가결과 심의 및 자문
⑦ 평가결과 확정	· 자체평가보고서 완성 및 확정(총장 승인) · 평가결과 담당부서 배포
⑧ (전문대학)평가인증 심사	· 서면평가 보고서 제출 · 현장평가(비치자료 등의 기록물 관리, 면담자 준비 등)
⑨ 결과 공개 및 환류	· 자체평가 결과 공개 · 결과에 따른 환류(대학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 개선 및 보완 노력)

제Ⅲ장 자체평가 결과

1. 평가결과 총괄

1) 총 7개 기준, 17개 세부기준, 37개의 평가요소 모두 충족 판정함

기준	평가요소	평가방법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Y	C	N	P
기준1 대학의 사명과 책무	☐ 1.1.1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	정성	○			
	☐ 1.1.2 대학발전계획	정성	○			
	☐ 1.2.1 대학의 조직 및 운영	정성	○			
	☐ 1.2.2 의사결정구조	정성	○			
	☐ 1.3.1 대학의 책무	정성	○			
	☐ 1.3.2 교육품질 개선	정성	○			
	☐ 1.3.3 교육만족도	정성	○			
기준2 교육과정	☐ 2.1.1 교육과정 개발 및 질 보장	정성	○			
	▲2.2.1 현장중심 전공교육 (전공강좌당 학생수) (학생1인당 실험실습비)	정량적정성	○			
	☐ 2.2.2 직업기초, 기초학습 및 교양교육	정성	○			
기준3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지원	▲3.1.1 학생선발(신입생 총원율)	정량적정성	○			
	☐ 3.1.2 학사 및 수업관리	정성	○			
	▲3.1.3 재학생 총원(★재학생총원율)	정량적정성	○			
	▲3.1.4 학업 성취도 평가(성적분포 비율)	정량적정성	○			
	☐ 3.2.1 교수학습 지원 및 평가	정성	○			
기준4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 4.1.1 산학협력활동	정성	○			
	☐ 4.1.2 취·창업지원	정성	○			
	▲4.1.3 취업률(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률)	정량적정성	○			
	☐ 4.2.1 현장실습 지원	정성	○			
	☐ 4.3.1 평생교육 운영	정성	○			
기준5 학생	☐ 5.1.1 학생활동 및 안전관리	정성	○			
	☐ 5.1.2 학생상담과 진로	정성	○			
	▲5.1.3 학생복지(★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정량적정성	○			
	▲5.1.4 도서관 지원(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정량적정성	○			
	☐ 5.1.5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지원	정성	○			
기준6 교·직원	☐ 6.1.1 교원 인사관리	정성	○			
	▲6.1.2 전임교원의 확보(★전임교원 확보율)	정량적정성	○			
	▲6.1.3 연구(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정량적정성	○			
	☐ 6.1.4 교원 역량 개발	정성	○			
	☐ 6.2.1 직원 인사관리	정성	○			
	☐ 6.2.2 직원 역량 개발	정성	○			
	▲6.3.1 교·직원 처우 및 복지 (교원, 직원 급여수준의 적절성)	정량적정성	○			
기준7 재정 및 시설	☐ 7.1.1 연간 예산 수립 및 결산	정성	○			
	▲7.1.2 대학재정 확보(★교육비 환원율)	정량적정성	○			
	☐ 7.2.1 재정·회계운영의 적절성	정성	○			
	▲7.3.1 교육시설의 확보 및 유지(교사확보율)	정량적정성	○			
	☐ 7.3.2 정보보안 체계	정성	○			

2. 기준별 세부평가결과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1	1.1	1.1.1	1.1.1.1	○				1. 정보공시 14-가. 정관 2. 정보공시 11-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3. 대학의 사명 홈페이지 탑재자료 4. 대학요람 5. 대학의 사명 구성원 공유 자료 6. 대학의 설립이념 자료 7. 2019~2021 대학 혁신 및 중장기 발전계획 pp.11 8. 교육목표 수립 시 구성원 의견수렴 자료(2012년) 9. 교육목표 평의원회 심의, 이사회 승인 자료(2012년) 10. 교육목표 공유 노력 자료	1. 대학은 설립이념과 부합한 사명과 교육목표를 제정하여 대학평의원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은 사명이 대학의 설립이념 및 설립목적, 대학의 특성 등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대학 설립이념 자료 및 2019~2021 대학 혁신 및 중장기 발전계획(p.11 비전 및 전략체계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대학의 사명은 대학 홈페이지, 대학요람, 중장기 발전계획(정보공시 11-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원들과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대학의 사명 변경사항 없음)
1	1.1	1.1.1	1.1.1.2	○				1. 정보공시 1-가. 학교규칙 2. 대학의 사명 홈페이지 캡처 3. 대학요람 4. 대학의 사명 구성원 공유 자료 5. 대학의 설립이념 자료 6. 2019~2021 대학 혁신 및 중장기 발전계획 pp.11 7. 교육목표 수립시 구성원 의견수렴 자료(2012년) 8. 교육목표 평의원회 심의, 이사회 승인 자료(2012년) 9. 교육목표 공유 노력 자료	1. 대학은 설립이념과 대학의 사명 아래 대학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비전과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추고 있음 2. 대학은 최초 교육목표 수립 시 교수, 직원, 학생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하였고, 대학평의원회 심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학 구성원들에게 공표하고 있음 3. 대학의 교육목표는 비전 선포식, 대학 홈페이지 게시, 중장기발전계획 배포, 대학 홍보물품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대학의 교육목표 변경사항 없음)
1	1.1	1.1.2	1.1.2.1	○				1. 정보공시 11-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2. 2019~2021 대학 혁신 및 중장기 발전계획 DREAMIN2021 3. 2016~2020 대학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 DREAM+2020 4. 2016~2020 대학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 5. 대학 발전계획 수립 관련 자료 6. 대학발전계획의 이행 자료 7. 구성원 및 산업체 의견 수렴 자료 8. 교무위원회 회의록	1.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고 있음을 2019~2021 대학 혁신 및 중장기 발전계획(p.11 비전 및 전략체계도)을 통해 확인함 2. 2016~2020년 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한 후, 2016~2020년 발전계획의 2016년 연차평가 및 2017년 중간평가를 통해 발전계획을 DREAM+2020으로 고도화하였음. 이후 2019~2021 대학 혁신 및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재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함. 또한 수립된 발전계획의 이행결과는 매 학년도 대학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 연차평가 결과 및 분석 보고(2018.01, 2019.01.,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9. 대학평의회 회의록 10. 법인이사회 회의록 11. 구성원 공표 자료 12. 2017~2019학년도 대학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 중간점검 결과 보고 13. 2017~2019학년도 대학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 연차평가 결과 및 분석 보고	2020.01) 내부결재 문서를 통해 이행결과를 확인함 3. 대학 혁신 및 중장기 발전계획은 다양한 내외부 이해관계자 요구의 충실한 반영을 위해 재학생 및 졸업생 만족도 조사, 교직원만족도 조사, 산업체 만족도 조사 및 행정부서 회의 결과를 발전계획의 대내외 환경분석 자료에 반영함을 확인하였으며, 교무위원회 검토(2019.02.26), 대학평의회 심의(2019.02.27) 및 이사회 승인(2019.04.01)을 받아 시행하고 있음을 해당 회의록을 통해 확인함 4.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은 대학 홈페이지, 대학 정보공시(11-가) 등에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여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1	1.1	1.1.2	1.1.2.2	○				1. 정보공시 1-가. 학교규칙 2. 정보공시 11-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3. 2019~2021 대학 혁신 및 중장기 발전계획 DREAMIN2021 4. 2016~2020 대학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 DREAM+2020 5. 2016~2020 대학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 6. 대학 발전계획 수립 관련 자료 7. 대학발전계획의 이행 자료 8. 구성원 및 산업체 의견수렴 자료 9. 교무위원회 회의록 10. 대학평의회 회의록 11. 법인이사회 회의록 12. 구성원 공표 자료 13. 대학자체평가 규정 14.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관리 운영 지침 15. 교육품질관리 규정 16. 2017~2019학년도 대학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 중간점검 결과 보고 17. 2017~2019학년도 대학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 연차평가 결과 및 분석 보고 18. 대학자체평가위원회 회의록	1. 중장기 발전계획의 실적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계획 내에 VI.전략실행 및 성과관리체계를 포함하여 구축하고 있으며, 학칙, 대학자체평가 규정,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관리 운영 지침, 교육품질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2.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부서별(학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과제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차원에서 기획조정처와 대학자체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중간점검 및 연차별 평가를 통해 수행내용을 평가하고 있음을 2017~2019학년도 대학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 연차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함. 연도별 자체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하여 차기년도 부서(학과)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환류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2017~2019학년도 대학 교육품질관리 보고서, 2017~2019학년도 행정부서 자체평가보고서, 2018~2020학년도 행정부서 운영계획서를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19. 2017~2019학년도 대학 교육품질관리 보고서 20. 2017~2019학년도 행정부서 자체평가보고서 21. 2018~2020학년도 행정부서 운영계획서 22. 2017~2019학년도 학과 자체평가보고서(학과 CQI) 23. 2018~2020학년도 학과 운영계획서	
1	1.2	1.2.1	1.2.1.1	○				1. 정보공시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의 학교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2. 정보공시 14-가. 정관 3. 직제규정 4. 사무분장규정 5. 위임전결규정 6. 업무편람 7. 문서수신/발신관리(통합정보시스템)	1. 대학의 사명과 비전, 교육목표 달성,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5처, 4개 부속기관, 3개 부설기관, 19개 학과로 대학의 조직을 적절히 구성하고 있음을 직제규정을 통해 확인함 2. 대학은 정관, 학칙, 사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업무편람에 각 조직의 구성, 권한, 책임범위, 역할분담, 전결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관련 규정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대학 통합정보시스템(문서수신/발신관리)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1	1.2	1.2.1	1.2.1.2	○				1. 문서처리규정 2. 문서관리 및 보존지침 3. 문서번호에 관한 지침 4. 문서수신/발신관리(통합정보시스템)	1. 문서의 작성, 처리, 편철 및 보존 등을 문서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음. 문서관리 부서, 보존기간, 파기 등 세부적인 문서 처리 및 분류를 위해 문서관리 및 보존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문서번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문서번호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2. 행정부서의 모든 결재문서는 문서처리규정에 의해 생성되며, 위임전결 규정에 의거 책임과 권한에 따라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부서 업무별 문서 보존 기간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존 기간이 끝난 문서는 총장의 결재를 통해 파기하고 있음. 또한 행정부서의 모든 내부결재 문서는 문서번호 구성체계 대로 문서번호를 규칙적으로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1	1.2	1.2.1	1.2.1.3	○				1. 제규정 관리 규정 2. 2017~2019학년도 교무위원회 회의록 문서철 3. 2017~2019학년도 규정 확정 시행 내부결재 문서철 4. 대학 홈페이지 (규정집, 제규정 의견수렴 게시판)	1. 제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제규정 관리 규정에 따라 입안부서에서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안하고, 제규정 관리부서 심사 후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확정 및 공포하는 등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제규정을 관리 운영하고 있음을 2017~2019학년도 교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무위원회 회의록 문서철, 2017~2019학년도 규정 확정 시행 내부결재 문서철을 통해서 확인함 2.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에서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규정 심의 이전 대학 홈페이지 제·개정 의견수렴 게시판에 3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규정 심의 이후 대학 홈페이지 규정집을 통해 대학 구성원에게 공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1	1.2	1.2.2	1.2.2.1	○				1.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2.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3.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 4.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5. 교무위원회 규정 6. 교수업적평가 규정 7. 주요 위원회 구성 및 위촉 내부결재	1. 대학은 대학평의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법정위원회를 비롯한 교무위원회 및 교수업적평가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구성원의 참여를 위하여 각각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를 규정에 따라 준수하여 위촉하고 있음을 주요 위원회 구성 및 위촉 내부결재를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1	1.2	1.2.2	1.2.2.2	○				1. 2017-2019학년도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2. 2017-2019학년도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3. 2017-2019학년도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회의록 4. 2017-2019학년도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5. 2017-2019학년도 교무위원회 회의록 6. 2017-2019학년도 교수업적평가위원회 회의록 7. 교직원 회의 자료 및 대학발전 제안 자료 8. 이사회 회의록 9. 교직원 요구가 반영된 정책 자료(산학협력처 신설 등 11건)	1. 대학은 전체교수회의, 학과장 회의, 팀장 회의, 교무위원회 등 상시 회의를 통해 교직원들의 의견수렴을 받고 있으며, 대학 홈페이지의 대학발전 제안제도를 마련하여 상시적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대학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은 대학평의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받고 있으며, 합의된 내용은 규정과 절차에 의해 법인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은 교직원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산학협력 인프라 조성, 학사구조 개편 규정 마련, 온라인 기반 학습환경 조성(LMS), 강의실 및 실습실 공간 조정, 집중휴무제도 등의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습환경 조성, 집중휴무제도 시행 등 양질의 교육 및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반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영하고 있음을 근거자료(산학협력처 신설 등 11건)를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1	1.2	1.2.2	1.2.2.3	○				1.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 2. 교무위원회 규정 3. 대학평의회 규정 4. 교원인사규정 5. 학사구조 개편에 관한 규정 6. 교원소속변경 및 전공전환에 관한 규정 7. 학과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전략기획 TFT 위촉 8. 학과 포트폴리오 구성 방안 9. 구성원 의견 조정 및 합의 자료(바이오환경과, 환경보건과) 10. 2017학년도 학사구조 개편 및 정원조정 계획(안) 심의 승인 자료 11. 구성원 의견 조정 및 합의 자료(세무회계학과, 경영학과) 12. 신설학과 준비 및 전담교원 지정, 전공전환 교육 지원 관련 자료 13. 2018학년도 학사구조 개편 및 정원조정 계획(안) 심의 승인 자료 14. 2019학년도 학사구조 개편 및 정원조정 계획(안) 심의 승인 자료	1. 학사구조개편 기준, 방법, 학생 학습권 및 교원 신분보장 등 학사구조 개편 및 정원조정 관련 사항 및 심의 절차에 대해 규정에 명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의 정원운영은 대학 정원운영 규모 결정 → 학과평가 후 의견수렴을 통한 정원조정 협의안 도출 → 대상학과 조정·협약에 의한 정원조정 계획안 도출 → 심의·승인의 절차에 따른 학칙 개정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과의 개설, 통폐합 및 폐지 시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므로 충족 판정함
1	1.3	1.3.1	1.3.1.1	○				1. 정보공시 10-가.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2. 윤리헌장 3. 윤리강령 4. 교직원복무 규정 5. 취업규칙 6. 연구윤리규정 7. 기관생명윤리 규정 8.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9. 2017~2019학년도 연구 및 생명윤리 교육실적 10. 2017~2019학년도 성희롱, 성매매 예방 관련 교육 실적	1.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리헌장, 윤리강령, 교직원복무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 구성원은 교직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공정히 완수할 것과 직무 수행에 있어 서비스 정신, 품위유지 등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또한 연구윤리규정과 기관생명윤리 규정을 통하여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구성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1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12. 2017~2019학년도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교육실적	특례법」에 의거하여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하였으며, 대학에서의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대학 구성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또한 대학은 개인정보 및 대학의 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발생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대학정보의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매년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교육을 통하여 엄격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2. 대학은 대학 경영 및 학사운영에서의 행·재정적 부당행위, 정보공시 위반, 연구비 및 국고 집행에서의 법률 및 규정 위반, 성희롱 등 윤리적 부분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없음을 '정보공시 10-가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를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1	1.3	1.3.1	1.3.1.2	○				1. 정보공시 12-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2. 사회봉사단 운영규정 3. 사회봉사단 교직원 인사발령 내부결재(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포함) 4. 2018~2019학년도 사회봉사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5. 2017~2019학년도 사회봉사단 운영계획서 6. 2017~2019학년도 사회봉사단 자체평가보고서 7. 2017~2019학년도 마일리지 봉사 현황 8. 2017~2019학년도 사회봉사단 사회봉사활동 실적 9. 2017~2019학년도 사회봉사단 예산집행내역서	1. 대학은 대학의 구성원들이 대학의 사회봉사활동의 목표와 취지에 맞게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에게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사회봉사단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한 추진방침(정책)을 설정하고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또한 재학생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봉사 마일리지 장학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와 같은 추진방침과 목표를 바탕으로 수립한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은 2017학년도 국내 29건, 2018학년도 국내 9건, 국외 1건, 2019학년도 국내 30건, 국외 1건의 봉사 실적이 있음. 특히 2019학년도의 경우 사회봉사활동 중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으로 식품영양과, 치위생과, 세무회계학과와 연계하여, 사회취약계층 조리교육·스케일링·컴퓨터교육을 학기별/학과별 1회, 총 6회 실시하였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1	1.3	1.3.2	1.3.2.1	○				1. 정보공시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의 학교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1. 대학은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평가·개선하기 위해 학칙, 대학자체평가규정, 교육품질관리규정,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2. 정보공시 14-가. 정관 3. 대학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 4.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관리 운영지침 5. 학칙 제19장 제85조 6. 대학자체평가규정 7. 교육품질관리규정 8. 직무능력성취도 평가에 관한 규정 9. 교육만족도조사 규정 10. 교수업적평가 규정 11. 교원 강의평가 운영 규정 12. 2017~2019학년도 대학 교육품질관리 보고서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관리 운영지침, 직무능력성취도 평가에 관한 규정, 교육만족도조사 규정, 교수업적평가 규정, 교원 강의평가 운영 규정, 특성화사업 운영규정, 특성화사업 자체평가규정, 혁신지원사업 운영규정, 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규정 등의 관련 규정, 지침을 갖추어 준수하고 있음 확인함 2. 대학은 교육품질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해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평가를 위한 전담 조직(자체평가 위원회, 자체평가추진실무위원회, 부서 운영위원회, 학과 교육과정 개발위원회, 교육품질관리위원회, 직무능력성취도 평가위원회, 교육만족도위원회, 교수업적평가위원회, 강의평가 운영위원회, 외부 회계감사기관, 특성화(혁신지원) 사업추진위원회, 특성화(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을 구성하여 평가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함 3.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의 발전전략 전략과제 수립 시 기관평가인증 기준별 평가요소,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등의 외부평가 지표와 연계한 중장기 발전전략 20개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성과관리지표를 선정함으로써 각 평가지표들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관리되고 있음. 또한 대학의 교육품질 제고를 위한 평가체제는 교육목표와 중장기 발전계획을 기본으로 각 부서별 핵심성과지표를 지정하여 부서운영계획 수립 시 교육목표, 발전계획, 외부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작성하고, 부서자체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차기년도 운영계획에 환류하고 있으므로 충족 판정함
1	1.3	1.3.2	1.3.2.2	○				1. 정보공시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의 학교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2. 특성화사업 운영규정 3. 특성화사업 자체평가규정 4. 혁신지원사업 운영규정 5. 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규정 6. 2017학년도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2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보고서	1. 대학은 학칙 제85조(자체평가)에 따라 자체평가 근거를 마련하였고,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대학자체평가 규정, 중장기발전계획 성과관리 운영지침, 교육품질관리규정에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의 사명과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품질의 보장 및 개선을 위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은 자체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해 총장에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7. 2018학년도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3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보고서 8. 2019년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보고서 9. 2018년 대학자체평가 결과보고서 10. 2017년 기관평가인증 대학자체평가 보고서 11. 2017년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과제 2차년도 이행실적보고서 12.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자체진단보고서 13. 2017~2019학년도 부서 자체평가보고서 14. 2017~2019학년도 학과 CQI 보고서 15. 2017~2019학년도 대학 교육품질관리 보고서 16. 2017~2019학년도 직무능력성취도 결과 보고 17. 2017~2019학년도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18. 2017~2019년 교수업적평가 결과 보고서 19. 2017~2019학년도 강의평가 결과 보고 20. 2016~2018학년도 회계감사 결과 보고 21. 2017학년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연차평가 보고서 22. 2018학년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종합평가 보고서 23. 2019학년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보고서 24. 대학 주요성과지표 관리계획(안) 25.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록 26. 대학 교육품질관리 개선 실적(교수지원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등 11건)	게 보고하고, 대학 차원에서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 과제별 해당부서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개선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관련 대학 교육품질관리 개선 실적(교수지원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등 11건)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1	1.3	1.3.3	1.3.3.1	○				1. 교육만족도 조사 관련 규정 및 지침 2. 2017학년도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3. 2018학년도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4. 2019학년도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5. 2017~2019학년도 교육만족도 조사 추진계획 6. 2017~2019학년도 교육만족도 문항개발 및 타당성	1. 대학은 교육만족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교육 활동 전 분야에 대해 재학생, 산업체, 졸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만족도 시행은 계획수립, 설문도구 개선, 조사 시행 및 환류 단계로 매년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검증 실적 7. 2017~2019학년도 교육만족도 조사 실시 결재문서 8. 2017~2019학년도 교육만족도 개선 계획 자료 9. 2017~2019학년도 행정부서 운영계획서 10. 2017~2019학년도 교육만족도 개선 활동 결과 보고 11. 2017~2019학년도 행정부서 자체평가 보고서	2. 대학은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만족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 결과 보고서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해 환류계획을 수립하여 차년도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환류 과제에 대해 연도별 부서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부서 자체평가를 통해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 주기적으로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유·무형의 교육 서비스 개선 노력을 적극 이행하고 있음을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2	2.1	2.1.1	2.1.1.1					1. 학칙 및 학사내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3. 교양 교육과정 편성·이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4. 직업기초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5. 교직과정 운영 관리 지침 6. 대학교육 목표와 학과 교육목표 7. 18,19학년도 교육과정 개발(개편) 보고서 8. 20학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9.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인정 규정 10. 집중수업 운영 지침 11. 사회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지침 12. 재입학 운영 지침 13. 2018~2020학년도(1·2학기) 전과 허가 및 학점인정 결과 보고, 전과 시행 및 공고 14. 2017~2019학년도(1·2학기) 재수강 신청 승인, 재수강 신청 공고 시행 15. 2017~2019학년도(1·2학기) 조기취업 학점인정 승인,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인정 시행 및 공고 16. 19-2학기 집중수업 운영결과 보고 및 집중수업 운영 승인 및 시행 17. 19-2학기 주문식 교육 운영 결과 보고 및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실시 18. 2017~2019학년도(1·2학기) 재입학자 등록	1. 대학은 교육품질을 보장하고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칙」 및 「학사내규」 및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교양 교육과정 편성, 이수 및 운영지침」, 「직업기초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교직과정 운영 관리 지침」을 갖추고 있으며, 학과는 이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개발(개편)하고 있음 2. 대학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지원을 위해 전과, 재수강,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제도, 집중이수제도, 사회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 재입학 등 다양한 학사제도 지침을 갖춰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2	2.1	2.1.1	2.1.1.2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2. 교양 교육과정 편성·이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3. 직업기초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4. 교과과정개발위원회 위원 변경 위촉 5. 교양 교과개발위원회 위원 위촉 6. 교과과정 심의위원회 위원 변경 위촉 7. 기획조정처 위원회(대학평위원회) 위원 변경 위촉 8. 2018, 2019학년도 교육과정 개발(개편) 보고서 9. 2020학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10. 2017~2019학년도 교과과정개발위원회 회의록 11. 2017~2019학년도 교양 교과과정개발위원회 회의록 12. 2017~2019학년도 교과과정심의위원회 회의록 13. 2017~2019년도 대학평위원회 회의록 14. 교과과정 개발위원회 운영 지침 15. 교양교과 개발위원회 운영 지침 16. 교과과정심의위원회 규정 17. 2018,2019학년도 교육과정 품질관리 자체 점검 보고서 18. 2017~2019학년도 학과 CQI 19. 2017~2019학년도 대학 교육품질관리 보고서 20.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매뉴얼 21. 2017~2019년도 교육과정 개발 지원 실적 22. 2017~2019학년도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1. 학과는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정책을 기반으로 「학칙」 제32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제12, 13조, 「교양 교육과정 편성, 이수 및 운영지침」 제 4, 5조, 「직업기초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제 4, 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체 인사가 포함된 교과과정 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NCS기반 교육과정과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개편) 시에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에서 규정하는 절차와 NCS 교육과정 운영 가이드라인 및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교육과정을 개발(개편)하고, 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의 경우 DACUM 등 자체 직무분석을 통한 현장중심형 교육과정으로 개발(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음. 교육과정의 일부 변경 시에도 관련 규정(「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제 7, 9, 14, 15, 17, 32조)에 의거 학과별 교육과정 수요자 요구조사를 통해 개편 수요를 확인하고, 교과과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과목을 변경하고 있음 2. 학과는 매 학년도 학과별 교육과정 운영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교육품질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차년도 학과 운영계획서에 반영하며, 이를 교육과정 개발(개편) 시 적용하고 있으며, 학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개편)은 2017년 NCS 기반 교육과정 신규 개발 1건, 개편 11건, 2018년 NCS 기반 교육과정 신규 개발 3건, 2019년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 19건, 통합교양 교육과정 개발 1건, 주문식교육과정 개발 7건, 역량기반교육과정 개발 19건을 시행하였으며, 총 324,886천원을 회의 경비로 지원하였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2	2.1	2.1.1	2.1.1.3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2. 2018,2019학년도 교육과정 개발(개편) 보고서 3. 2020학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4. 교과과정개발위원회 위원 변경 위촉 5. 2017~2019학년도 교과과정개발위원회 회의록 6. 2017~2019학년도 대학 교육품질관리 보고서 7. 2017~2019학년도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1. 교육과정 개발(개편) 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제16조, 32조에 따라 매년 재학생, 졸업생과 산업체의 교육과정 수요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품질 관리를 위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과정 운영전반을 평가하고 수요자(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를 시행, 분석하여 차년도 학과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과는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개편) 시 산업체 요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8. 2017~2019학년도 교양 교과과정개발위원회 회의록 9. 2017~2019학년도 교과과정심의위원회 회의록 10. 2017~2019학년도 대학평의회 회의록 11. 교양 교과개발위원회 위원 위촉 12. 교과과정 심의위원회 위원 변경 위촉 13. 기획조정처 위원회(대학평의회) 위원 변경 위촉 14. 대학평의회 규정	구의 반영 및 산업환경 변화 분석을 고려하기 위해 현장전문가(SME)를 교과과정 개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2. 교육과정 개발(개편) 관련 주요 사항은 학과 교과과정 개발위원회, 교양교과 개발위원회, 교과과정 심의위원회, 대학 평의회를 통해 심의하고 있으며, 교과과정 개발위원회 2017년 4건, 교양교과 개발위원회 2017년 2건, 2018년 3건, 2019년 4건, 교과과정 심의위원회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6건의 심의 실적이 있으며, 교육과정 개발(개편) 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재학생, 졸업생과 산업체의 교육과정 수요도 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시행, 분석하여 차년도 학과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개편) 시 산업체 요구의 반영 및 산업환경 변화 분석을 고려하기 위해 현장전문가(SME)를 교과과정 개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충족 판정함
2	2.2	2.2.1	2.2.1.1					1. 2018,2019학년도 교육과정 개발(개편)보고서 2. 2020학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보고서 3. 2017~2019학년도 교과목 강의계획서 4. 학과홈페이지	1. 대학은 학과의 교육과정 개발보고서, 학과 홈페이지, 강의계획서 등에서 직무능력, 직무수행 내용 및 수준, 평가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강의계획서에는 학과 교육목표, 교과목 학습목표, 성취수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교육장소, 교재, 평가방법 및 내용, 주차별 학습내용 등이 기술되어 있음. 강의계획서는 학생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지하며 수시로 열람할 수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은 학과의 교육과정 개발보고서, 학과 홈페이지, 강의계획서 등에서 직무능력, 직무수행 내용 및 수준, 평가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강의계획서에는 학과 교육목표, 교과목 학습목표, 성취수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2	2.2	2.2.1	2.2.1.2					1. 학칙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3. 2018,2019학년도 교육과정 개발(개편)보고서 4. 2020학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보고서	1. 대학은 전공교과 편성 관련 규정(또는 지침)으로 「학칙」 제32조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제9조에 따라 전공교육과정을 학과 교육과정의 70~95%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이 중 30% 이상은 실험 또는 실습과목으로 편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5. 2017~2019학년도 교과과정표 6. 2017~2019학년도 담당 과목 및 시간승인 7. 2017~2019학년도 담당 과목 시수 조정 보고	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대학은 전공교과 편성 관련 규정(또는 지침)으로 「학칙」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전공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전공교과목의 실습과목 시수비율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2017학년도(49.2%), 2018학년도(50.4%), 2019학년도(53.0%)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2	2.2	2.2.1	2.2.1.3					1. 2017~2019학년도 교과목 강의계획서 2. 학사내규 16조 3. 강의계획서 조회화면	1. 각 교과별로 강의계획서를 갖추고 있으며, 강의계획서에는 학과 교육목표, 교과목 학습목표, 성취수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교육장소, 교재, 평가방법 및 내용, 주차별 학습내용 등이 기술되어 있고, 학생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지하고 있음 2. 위와 같이 각 교과별 강의계획서를 갖추고 학생에게 공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2	2.2	2.2.1	2.2.1.4					1. 수업운영지침 2. 19,18,17학년도 담당 과목 및 시간승인 3. 19,18,17학년도 담당 과목 시수 조정 보고	1. 전공과목의 강좌당 학생 수는 수업운영 지침 제8조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며, 2017학년도(1학기 26.2명, 2학기 26.5명), 2018학년도(1학기 26.8명, 2학기 26.6명), 2019학년도(1학기 26.8명, 2학기 26.8명)으로 매 학기 평균 33명 이하로 유지하여 운영하고 있어 인증 기준인 평균 33명 이하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충족 판정함
2	2.2	2.2.1	2.2.1.5					1. 정보공시 4-마 2. 2016~2018학년도 회계연도 결산서(교비회계) 3. 2016~2018학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산학협력단회계)	1. 학생 1인 당 실험실습비(산단회계 포함)는 2016학년도 193.6천원, 2017학년도 217천원, 2018학년도 248천원으로 기관평가인증 충족 기준 157천원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정보공시 4-마, 2016~2018학년도 교비회계 및 산단회계 결산서를 통해 확인하여 인증기준 157천원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충족 판정함
2	2.2	2.2.2	2.2.2.1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2. 직업기초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3. 2017~2019학년도 교과과정개발위원회 회의록 4. 2017~2019학년도 교양 교과 개발위원회 회의록 5. 2017~2019학년도 교과과정심의위원회 회의록 6. 2017~2019학년도 직업기초능력 특강 결과 보고	1. 대학은 교육목표와 사명에 근거한 차별화된 교양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6대 교양 핵심역량을 선정하고, NCS 기반 및 현장중심 전공교육과 연계하여 직업기초능력 중심의 교양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기초능력 정규 온라인 교육(2017학년도 3강좌, 2018학년도 3강좌, 2019학년도 3강좌) 및 비정규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7. 2017~2019학년도 직업기초능력 온라인교육 결과보고 8. 2017~2019학년도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 결과보고 9. 2017~2019학년도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 보고 10. 2017~2019학년도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온라인 교육(2017학년도 48강좌, 2018학년도 93강좌, 2019학년도 30강좌), 특강(2017학년도 46강좌, 22,167천원, 2018학년도 31강좌, 14,102천원, 2019학년도 20강좌, 7,200천원) 등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2	2.2	2.2.2	2.2.2.2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2. 학칙 3. 대학 교육목표와 학과 교육목표 4. 직업기초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5. 2017~2019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6. 2017~2019학년도 교과과정개발위원회 회의록 7. 2017~2019학년도 교양 교과 개발위원회 회의록 8. 2017~2019학년도 교과과정심의위원회 회의록 9. 2017~2019년도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0. 2017~2019학년도 교과과정표 11. 2017~2019학년도 담당 과목 시수 조정 보고 12. 역량기반 통합교양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13. 2017~2019학년도 교육만족도 결과표	1. 대학은 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해 6대 핵심 교양 교육역량(직업기초, 인성, 창의·취창업, 봉사, 글로벌)을 「교양 교육과정 편성·이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으로 정하고, 교육과정 편성 시 대학의 사명, 교육목표 및 인재상을 고려하여 연계성을 유지하며, 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의거해 교양 교육과정은 대학의 통합교양 교육과정과 학과교양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학과별 교양 교육과정은 졸업학점의 5~30%범위 내에서 직업기초능력 교양 교과목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함 2. 학과 교양 교육과정은 학과별 교과과정 개발위원회, 교과과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학 평의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하고 있으며, 대학의 통합교양 교육과정은 대학 교양 교과 개발위원회, 교과과정 심의위원회 심의와 대학 평의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하고 있음을 확인함 3. 대학의 교양교육은 통합교양과 학과 교양 교과목으로 2017학년도 1학기 89개, 2학기 74개 교과목, 2018학년도 1학기 84개, 2학기 71개 교과목, 2019학년도 1학기 70개, 2학기 58개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2	2.2	2.2.2	2.2.2.3					1. 2017~2019학년도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 보고 2. 2017~2019학년도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3. 2017~2019학년도 국어 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결과보고	1.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습능력 국어 진단평가(2017학년도 1,469명, 2018학년도 1,403명, 2019학년도 1,447명)와 기초수학능력향상 프로그램(2017학년도 66명, 2,822천원, 2018학년도 75명, 3,839천원, 2019학년도 98명, 3,514천원)을 진행하였으며, 국어 기초학습능력 부진 학생을 위한 학습능력 향상 지원으로 기초 튜터링 사업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4. 2017~2019학년도 국어 기초 튜터링 사업 최종 결과 보고 5. 2017~2019학년도 기초 수학능력 교육 결과 보고	(2017학년도 튜터 3명, 튜티 150명, 사업비 7,500천원, 2018년 튜티 19명, 튜터 73명, 사업비 4,700천원, 2019학년도 튜터 34명, 튜티 115명, 사업비 7,450천원 집행)을 진행한 실적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3.1	3.1.1	3.1.1.1	○				1.대학정보공시(3-가)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2.2017~2019학년도 모집요강(별책) 3.사정위원회 규정 4.입학전형관리규정 5.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6.입시관련 회의록(별책)	1. 대학은 대학정보공시(3-가), 대학 입시홈페이지, 모집요강에 입학전형시 차별하지 않는 입학정책을 반영하여 모집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입시홈페이지에 입시전형시행계획 및 모집요강을 공지하고 있음 3.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사정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위원간 중복 위촉되지 않았고, 입학전형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3.1	3.1.1	3.1.1.2	○				1. 대학정보공시 4-다(신입생 총원 현황)	1. 대학은 대학정보공시 4-다(신입생 총원 현황)의 확인 결과 2017학년도 입학정원 1,361명 모집에 1,361명, 2018학년도 입학정원 1,336명 모집에 1,336명, 2019학년도 입학정원 1,336명 모집에 1,336명을 총원하여 2017학년도~2019학년도 신입생 총원을 100%로 인증 충족 요건인 91%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3.1	3.1.1	3.1.1.3	○				1. 2017~2019학년도 신입생 입시설문 조사 결과보고 2. 2017~2019학년도 입시 결과보고서 3. 입시관련 회의록(별책)	1. 입학전형 종료 후, 입시 결과보고서를 통해 입시결과 및 입학전형에 대한 입시결과를 분석하고 있음을 확인함 2. 입시결과 분석보고서, 신입생 입시설문결과를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차년도 입학전형 계획수립에 반영하고 있음(2017학년도 비교과성적 반영 비율 강화, 2018학년도 정시모집 특기자 전형 폐지, 2019학년도 정원내전형 면접 확대 등)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3.1	3.1.2	3.1.2.1	○				1. 정보공시 1-가. 학교규칙 및 그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2. 학칙 3. 학사내규 4. 교육과정 편성 지침 5. 직업기초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6. 성적 관리지침	1. 대학은 학칙 및 학사내규, 학사관리 규정(교육과정 편성 지침, 직업기초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성적 관리 지침, 수업운영지침, 학사학위전공심과정운영규정, 사회봉사 활동 학점인정에 관한 지침, 현장실습 운영 규정, 직무능력 성취도 평가에 관한 지침, 전과규정,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인정 규정)을 갖추고 있음 2. 대학정보공시, 대학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구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7. 수업운영지침 8. 학사학위전공심과정운영규정 9.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에 관한 지침 10. 현장실습 운영 규정 11. 직무능력성취도 평가에 관한 지침 12. 전과규정 13.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인정 규정	성원들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3.1	3.1.2	3.1.2.2	○				1. 학칙 2. 학사 내규 3. 수업운영지침 4. 휴·보강 운영지침 5. 교수업적 평가규정 6. 2017~2019학년도 학과장 회의자료 7. 2017~2019학년도 학사관리 안내 내부결재 8. 2017~2019학년도 전자출결시스템 (출석부) 9. 2017~2019학년도 결석계 및 출석인정원(학기별 견본 1부) 10. 2017~2019학년도 출석결격자 현황보고 내부결재 11. 2017~2019학년도 보강계획서 및 보강결과보고서 12. 2017~2019학년도 출강일지 13. 2017~2019학년도 수업운영결과 보고서	1. 대학은 학칙, 학사 내, 수업운영지침, 휴보강 운영지침 등의 수업관리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음 2. 수업관리 관련 규정의 내용을 대학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으며, 학생의 출결관리 관련 규정(학칙, 학사내규, 수업운영지침 등)에 의거하여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출석 체크 및 출석결과를 성적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하고 있음. 또한, 학과장 회의, 학사관리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휴·보강 및 매학기 15주 이상 수업일수를 준수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강계획서 및 보강결과보고서, 출강일지, 수업운영결과 보고서를 확인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충족 판정함
3	3.1	3.1.2	3.1.2.3	○				1. 학칙 제37조(교수시간) 2. 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지침 제2조, 제4조, 제5조 3. 수업운영 지침 제4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4. 강사 인사규정 제17조 5. 강사료 지급 지침 제3조, 제4조 6. 2017~2019학년도 전임교원 초과강의료 및 강사 시간강의료 내역 보고(별책)	1. 대학은 강의시수 관련 규정을 학칙 제37조(교수시간)의 4건의 규정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대학홈페이지 규정집에 공지하고 있음 2.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초과강의료(2017~2019학년도 전임교원 초과강의료 및 시간강사 시간 강의료 내역 보고)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3.1	3.1.3	3.1.3.1	○				1. 대학 정보공시 4-라(학생 총원 현황), 2. 대학 정보공시4-마(재적 학생 현황)	1. 대학 정보공시 4-라(학생 총원 현황), 4-마(재적 학생 현황)를 확인하여 재학생 총원율은 2017학년도 95.2%, 2018학년도 94.5%, 2019학년도 93.8%로 인증 기준인 80%이상으로 충족 판정함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3	3.1	3.1.3	3.1.3.2	○				1. 전과 규정 2. 2017~2019학년도 오프라인(대학생활적응검사Ⅰ,Ⅱ,Ⅲ) 온라인(종합심리, 진로적성) 검사프로그램 시행 및 결과보고 외 5건 3. 재입학 대상자 재입학 권유(홈페이지 모집공고) 4. 2017~2019학년도 전공동아리 운영위원회 회의 및 운영실적 5. 평생지도교수제 운영방안(안) 보고	1. 대학은 전과제도 운영, 학생중심의 상담 프로그램 제공 및 대학생활 적응,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학생상담센터 운영, 학업중도 포기자를 위한 재입학 제도 대학홈페이지 공고, 재학생들의 전공능력 향상을 위한 학과별 전공동아리 운영, 평생지도교수제 등의 재학생 충원을 제고를 위한 실적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3.1	3.1.4	3.1.4.1	○				1. 직무능력성취도 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평가구성), 제10조(평가도구), 제11조(평가방법), 제12조(성취수준) 2. 내부결재(2017.03.20) 2017학년도 1학기 NCS기반 및 현장중심 전공교과목 향상.심화교육 운영실시 보고 외 8건	1. 대학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위해 직무능력성취도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음 2. 교과목 담당교수가 학생별 사전진단을 위한 자가진단 형식으로 구성하여 사전진단평가와 직무수행능력 평가서, 평가 결과서에 따라 교과목별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향상.심화교육(내부결재(2017.03.20) :2017학년도 1학기 NCS기반 및 현장중심 전공교과목 향상.심화교육 운영실시 보고 외 8건)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3.1	3.1.4	3.1.4.2	○				1. 성적관리지침(제3장 성적평가) 2. 대학정보 공시 2-가(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1. 성적관리 지침 제3장에 학점별 평가비율에 A학점의 성적분포 비율을 4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 정보공시 2-가의 근거로 2016학년도 1학기 31.73%, 2학기 32.31%, 2017학년도 1학기 32.9%, 2학기 32.91%, 2018학년도 1학기 36.5%, 2학기 36.12%로 학교 전체 A학점 분포 비율이 인증 기준인 40.0%이하로 충족 판정함
3	3.1	3.1.4	3.1.4.3	○				1. 학사내규(제27조) 및 성적관리지침(제4장, 제5장) 2. 내부결재(2017.05.23) 2017학년도 1학기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 공고 외 5 건 3. 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	1. 학사내규 제27조(성적의 분류), 성적관리 지침 제3장(성적 평가), 제4장(성적 열람 및 이의신청), 제5장 성적정정을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매학기 성적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를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을 확인결과 3개 학년도(2017학년도~2019학년도)에 총 100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정정 73건, 정정불가 27건을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3.2	3.2.1	3.2.1.1	○				1. 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 2.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지침 3. 직업교육혁신센터 규정	1. 대학은 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지침 등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규정을 갖추고 있음 2. 교수학습 지원조직으로 센터장(1인), 책임연구원(2인),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4. 교수학습 역량 혁신부 운영 지침 5. 개인별 업무분장 내부결재 6. 운영위원회 및 연구위원 위촉 및 해촉 내부결재 7. 2017학년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재학생 수요조사 결과 보고 내부결재(2016.12.15.) 8. 2018학년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교수자 및 재학생 수요조사 결과 보고 내부결재(2017.12.17.) 9. 2019학년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교수자 및 재학생 수요조사 결과 보고 내부결재(2018.12.19) 10. 2017학년도 ~2019학년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11. 2017~2019학년도 교수학습지원센터 행·재정적 운영 프로그램 결과 내부결재	연구위원(3인), 행정직원(3인)으로 조직과 담당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개인별 업무분장표로 확인함 3. 매학년도 교수자 및 재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 교수학습지원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개별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 만족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서운영계획에 의거한 프로그램 행·재정적 지원 실적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3.2	3.2.1	3.2.1.2	○				1. 2016~2018학년도 자체평가보고서 2.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내부결재 3. 2017~2019학년도 재학생 교육만족도 조사	1. 대학은 매학년도 부서자체평가와 재학생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부서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4. 2017~2019학년도 개선과제 이행실적 내용 내부결재	2. 매학년도 개선과제가 반영된 프로그램 이행실적을 개선과제 이행실적 내용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3.2	3.2.1	3.2.1.3	○				1. 교원 강의평가 운영 규정 2. 교수업적평가 규정 3. 2017~2019학년도 강의평가 관련 4. 2017~2019학년도 강의평가 운영위원회 회의록 5. 2017~2019년도 교수업적평가 최종 결과보고	1. 대학은 교원의 강의평가를 위한 교원 강의평가 운영 규정을 갖추고 있음 2. 대학은 강의평가 관련 내부결재를 통해 매학기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3.2	3.2.1	3.2.1.4	○				1. 교원 강의평가 운영 규정 2. 교수업적평가 규정 3. 2017~2019학년도 강의평가 관련(시행및결과보고) 4. 2017~2019학년도 강의평가 운영위원회 회의록 5. 2017~2019년도 교수업적평가 최종 결과보고 6.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외래강사) 7. 2017~2019학년도 1,2학기 전임교원 강의평가 저조자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현황 및 결과 보고	1. 대학은 매학기 강의평가 결과를 강의평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석하고 있음 2. 전임교원은 교수업적평가에 반영, 저조자 강의개선계획서 제출, 교수법 또는 관련 연수등의 이수과정 실시하고 있으며, 외래강사(강사법 시행전)강의평가 결과 70점이상자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후 임용함. 매학기 강의평가 저조자에 대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4	4.1	4.1.1	4.1.1.1	○				1.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 규정 2.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 3.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지침 4. 연구비 관리 지침 5. 산학협동위원회 운영 규정 6. 교원업적평가 규정 7. 현장실습운영 규정 8. 현장실습운영 지침 9. 현장실습지원센터 규정 10.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규정 11. 산학협동위원회 운영규정 12. 취업창업지원규정 13. 혁신지원사업 운영규정 14. 사무분장 규정 15. 산학협력처 부서별 업무분장 내부결재 및 회의록 16. 산학협동위원회 구성 내부결재 및 회의록 17. 산학협력처 부서별 업무분장 내부결재	1. 대학은 산학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정관」, 「산학협력단운영규정」, 「지적재산권관리에 관한 규정」,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지침」, 「연구비 관리 지침」, 「교원업적평가 규정」, 「현장실습운영규정」, 「현장실습운영지침」, 「현장실습지원센터 규정」,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규정」, 「산학협동위원회 운영규정」, 「취업창업지원규정」, 「혁신지원사업 운영규정」 등의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2. 대학은 산학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협력처 산하에 산학협력단(단장 포함 8명), 산학취업지원팀(3명), 현장실습지원센터(4명), 창업교육센터(2명) 조직을 총 17명으로 운영중에 있음을 「사무분장 규정」 및 「산학협력처 부서별 업무분장 내부결재」를 통해 확인하였고, 산학협동위원회 및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의 산학협력활동을 지원하고 있음을 「산학협동위원회 구성 내부결재 및 회의록」 및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내부결재 및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4	4.1	4.1.1	4.1.1.2	○				1. 2017학년도 ~ 2019학년도 산학협력처 부서별 운영 계획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2.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장애아동재활센터, 화성시 방문건강관리센터, 수원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결과보고서(2017, 2018, 2019년) 3.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연차평가보고서(2017, 2018년) 4.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보고서(2019년) 5. 산학협동위원회 규정 6. 2017학년도~2019 학년도 대학산학협력위원회 회의록	1. 대학은 산학협력처 산하의 산학협력단, 산학취업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 창업교육센터 등 조직별로 부서 자체평가를 통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차년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2017학년도 ~ 2019학년도 산학협력처 부서별 운영계획서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해 확인함 2. 대학은 산학협력 사업 부서별로 년도별 자체평가를 진행하여 차년도 개선사항을 도출한 것을 「2017학년도 ~ 2019학년도 산학협력처 부서별 운영계획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2017~2019년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장애아동재활센터, 화성시 방문건강관리센터, 수원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결과보고서」, 「2017~2018학년도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연차평가보고서」, 「2019학년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보고서」을 통해 확인하였고, 대학산학협력위원회를 통하여 대학의 전체 산학협력활동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진행하고 차년도 환류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산학협력위원회 규정」, 「2017학년도~2019 학년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도 대학산학협력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4	4.1	4.1.2	4.1.2.1	○				1. 산학협력처 사무분장 규정 2. 산학협동위원회 운영 규정 3. 취업창업지원 규정 4. 학생역량개발시스템 운영 지침 5. 학생지원협의회 학생지원 지침 6. 창업교육센터 운영 규정 7. 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위원회 규정 8. 학칙 9. 장학규정 10. 취창업업무서 전담 인력현황 11. 업무분장 12. 학생지원지침	1. 대학은 취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분장 규정」, 「산학협동위원회 운영 규정」, 「취업창업지원 규정」, 「학생역량개발시스템 운영지침」, 「학생지원 지침」, 「창업교육센터운영 규정」,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규정」, 「장학 규정」, 「학칙」 등의 규정 및 지침을 보유하고 해당 규정 및 지침에 취창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은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협력처(전담 인력 1명) 산하에 산학취업지원팀(전담인력 2명)과 창업교육센터(전담인력 2명)를 조직하여 5명의 전담인력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학생지원조직 중 산학취업지원팀, 창업교육센터 등이 당연직으로 운영되는 학생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부서간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음을 「직제 규정 또는 사무분장규정」, 「취창업업무서 전담 인력현황」, 「업무분장」, 「학생지원지침」 등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4	4.1	4.1.2	4.1.2.2	○				1. 2017~2019 산학취업지원팀 및 창업교육센터 부서 운영계획서 2. 2017~2019 산학취업지원팀 및 창업교육센터 자체평가보고서 3. 2017~2018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4. 취업창업지원규정 5. 창업교육센터운영규정 6. 2017~2019학년도 취업창업지원운영위원회 회의록 7. 2017~2019학년도 창업교육센터운영위원회 회의록 8. 2017~2018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9. 2019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0. 2017~2018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연차평가 보고서 11. 2019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보고서 12.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1. 대학의 취창업지원 계획은 취업지원위원회 및 창업교육센터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 자체평가를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차년도 부서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진행하였음을 「2017~2019학년도 취업창업지원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2017~2019학년도 창업교육센터운영위원회 회의록」과 「2017~2019학년도 산학취업지원팀 및 창업교육센터 부서 운영계획서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국고로 진행되는 사업은 2017~2018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2019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취창업 지원 취업준비도검사, 특강, 경진대회, 전시회, 박람회, 캠프, 상담을 포함하는 14개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2017~2019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통해 확인함 2. 대학의 취창업 지원의 평가는 「2017~2019 산학취업지원팀 및 창업교육센터 자체평가보고서」, 및 「프로그램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만족도조사」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져 도출된 과제의 개선 실적은 「2017~2019 산학취업지원팀 및 창업교육센터 부서 운영계획서」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국고로 진행한 사업의 경우 「2017~2018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연차평가 보고서」, 「2019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보고서」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4	4.1	4.1.3	4.1.3.1	○				1. 정보공시 5-다.졸업생의 취업현황 2. 취업통계조사 결과 송부 공문	1. 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은 정보공시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에 근거하여 2017년 74.6%, 2018년 75.7%, 2019년 75.6%로 인증 기준인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4	4.2	4.2.1	4.2.1.1	○				1. 현장실습 운영규정 2. 현장실습 운영지침 3.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 4.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규정 5. 현장실습 실무매뉴얼 6. 현장실습 교수용 가이드라인 7. 현장실습 학생용 가이드라인 8. 현장실습 지침서 작성 가이드라인 9. 현장실습지원센터 업무분장 실시 내부결재 10.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회의록	1. 대학은 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장(1명)과 전담직원(3명)의 체계를 갖추고 「현장실습 운영규정」, 「현장실습 운영지침」,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규정」 등의 규정 및 지침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실무매뉴얼」, 「현장실습 교수용 가이드라인」, 「현장실습 학생용 가이드라인」, 「현장실습 지침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의 매뉴얼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은 산학협력처 산하에 현장실습업무를 전담하는 현장실습센터를 두고 센터장(1명)과 전담직원(3명)의 체계를 갖추고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현장실습지원센터 업무분장 실시 내부결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현장실습 계획, 규정, 평가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4	4.2	4.2.1	4.2.1.2	○				1. 현장실습지원센터 부서운영계획서 2. 학과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3.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내부결재 4. 사전교육특강 개최 신청서 및 결과보고 5. 사전협의회 개최 신청서 및 결과보고 6. 사후평가회 개최 신청서 및 결과보고 7. 현장실습 참여수기 공모전 시행 기안 및 심사위원회	1. 만족도조사, 요구도조사, 운영평가 개선방안을 반영한 부서운영계획을 수립하였음을 「2017~2019학년도 현장실습센터 부서 운영계획서」를 통해 확인하였고, 수립된 운영계획에 따라 사전교육특강, 사전협의회, 사후평가회, 수기공모전, 일지콘테스트 등의 실적을 「학과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사전교육특강 개최 신청서 및 결과보고」, 「사전협의회 개최 신청서 및 결과보고」, 「사후평가회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보고 8. 현장실습 1차 일지 콘테스트 기안 및 심사위원회 결과보고 9. 현장실습 2차 일지 콘테스트 기안 및 심사위원회 결과보고 10. 학생 실습 종합보험 가입 11. 년도별 현장실습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2. 학과 현장실습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13.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자체평가보고서) 14. 현장실습 관련 서류(서식)등록 지정 내부결재 15. 현장실습센터운영규정 16.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규정 17. 2017~2019학년도 현장실습센터 부서 자체평가보고서	개최 신청서 및 결과보고», 「현장실습 참여수기 공모전 시행 기안 및 심사위원회 결과보고», 「현장실습 1차 및 2차 일지 콘테스트 기안 및 심사위원회 결과보고», 「년도별 현장실습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함 2. 현장실습 지원에 대한 평가로 「학과 현장실습 운영평가 결과 보고서»,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자체평가보고서)」, 「2017~2019학년도 현장실습센터 부서 자체평가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하였고, 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을 「2017~2019학년도 현장실습센터 부서 운영계획서」을 통해 반영함을 확인하였으며, 당해년도 사업의 신설, 개선, 확대, 운영 효율화를 위한 행정업무의 개선실적을 「2017~2019학년도 현장실습센터 부서 자체평가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4	4.3	4.3.1	4.3.1.1	○				1.평생교육원운영규정 2.평생교육원 조직도 3.평생교육원 업무분장 변경 보고 4.평생교육사 자격증 5. 학칙 제84조(부설기관) 6.사무분장규정 제 23조(평생교육원)	1.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칙 제 84조(부설기관)」에 평생교육원을 명시하고 「사무분장규정 제23조(평생교육원)」에 소관 사무를 지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2. 「직제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지원팀을 행정조직에 규정하고, 「평생교육원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원 원장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장을 포함하여 4명이 전담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2명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을 지닌 전문인력임을 「평생교육원 조직도», 「평생교육원 업무분장 변경 보고»,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4	4.3	4.3.1	4.3.1.2	○				1. 2017~2019학년도 운영계획서 2. 2017~2019학년도 자체평가 보고서 3. 2017~2019학년도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보고(회의록) 4. 2017~2019학년도 일반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5. 2017~2019학년도 학점은행제 강의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1. 평생교육원은 년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운영계획서에 따라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당해년도 운영한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와 실적을 평가 분석하여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2017~2019자체평가 보고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5	5.1	5.1.1	5.1.1.1	○				1. 장학규정	1. 대학은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정과 지침으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2. 상벌규정 3. 학생준칙 4.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5. 교육만족도조사 규정 6. 학생회칙 7. 학생회장 선거규정 8. 학생자치기구 간부선임규정 9. 학생회관 사용규정, 학생회 운영 10. 중앙동아리 등록 및 운영규정 11. 2017~2019년도 중앙동아리 운영 12. 전공동아리 운영지침 13. 2017~2019년도 개인별 업무분장개인별 업무분장 14. 2017~2019학년도 부서운영계획서 15. 2017~2019년도 학생지도위원회 명단	로 교육만족도조사규정, 학생지도위원회규정, 학생행사 안전관리 규정, 장학규정, 장학제도, 학생상벌 규정, 학생준칙, 학생회칙, 학생회(정, 부)장 선거규정, 미디어센터 운영규정, 학생자치기구 간부 선임 규정, 학생단체(중앙동아리) 등록 및 운영 규정, 전공동아리 운영지침 등의 규정 및 지침을 보유하고 있음 2. 대학은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직 및 추진체계로 담당인력과 업무분장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별 업무분장과 지원조직체계 및 학생지도위원회 명단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5	5.1	5.1.1	5.1.1.2	○				1. 2017~2019학년도 부서 운영계획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2. 2017~2019학년도 교육만족도조사 결과 3. 2017~2019년도 학생 자치기구 간부 교내장학금 지급 현황 4. 2017~2019년도 학생회 운영 5. 2017~2019년도 학과 전공동아리 운영 실적 6. 2017~2019년도 중앙동아리 운영 7. 2017~2019년도 미디어센터 운영 8. 2017~2019년도 학생활동 지원 실적 9. 2017~2019년도 학생지도위원회 명단 10. 2017~2019년도 학생지도위원회 회의록 11. 2017~2019년도 학생복지설문조사, 소리함 12. 2017~2018년도 총학생회 복지시설 개선 요청서	1. 대학은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부서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생활동(학생회, 체육대회, 축제,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 등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함 2. 재학생 복지 설문조사, 교육만족도조사 결과, 소리함 운영계획과 학생 요구사항 심의(평가)결과와 학생지원팀 부서자체평가를 통해 학생활동 지원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도출된 개선사항을 차기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 장학사업부분 : 드림플러스 장학금 신설 및 시행, 외국인 학생장학금 신설, 장학제도 홍보 홈페이지 개편 등 확인 - 장학제도 홍보와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0.08점 상승, 선발 기준 등 상승의 개선을 확인 - 학생활동지원부분 : 안전사고(음주, 폭행)예방을 위한 이동파출소 운영, 전공동아리 활동지원 등 확인, 전공동아리 복수 전공동아리 활동 제도 확인 - 학생자치기구활동 지원 : 학생봉사단 사회봉사, 학생기관 자치(축제, 체육대회, 수련회 등)활동 지원, 소리함 운영, 축제안전 이동파출소 운영, 축제 중 교내 주류 판매 금지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와 미라전 운영 최소화 및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 진행과 교육공동체 생활안전 경진대회개최, 학생회와 함께하는 학생인권보호소 운영 등 확인 - 평생지도교수 배정 및 관리, 전공동아리 활동지원, 학과별 대학생활안내 - 특별학생(장애인, 다문화가족, 외국인)학교생활 도우미 사업, 학생, 교직원 건강권 보호, 교과외 활동시 상해 치료비 지원 등 확인함
5	5.1	5.1.1	5.1.1.3	○				1. 학생행사 안전관리 규정 2. 2017~2019년도 개인별 업무분장 3. 2017~2019년도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문서철 4. 2017~2019년도경영자책임보험 가입	1. 대학은 학생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학생행사 안전규정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함 2.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학생지원팀의 담당 인력과 업무분장을 통해 추진체제를 확인함 3. 학생행사안전규정에 의거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2017~2019년도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문서철과 학생지원팀 담당자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고, 학생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경영자책임보험에 가입한 지원내용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5	5.1	5.1.2	5.1.2.1	○				1. 학생 상담 지원 규정 및 지침 2. 학생 상담 지원 인력 3. 학생 상담 지원 인력의 전문성 4. 학생상담 인력 근무일지 5. 학생상담센터 재학생 수요조사 6. 재학생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7. 2017~2019학년도 운영회의록 운영계획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8. 2017~2019학년도 오프라인(대학생활적응검사Ⅰ,Ⅱ,Ⅲ) 온라인(종합심리, 진로적성) 검사프로그램 시행 및 결과보고 9. 2017~2019학년도 학생상담(개인·집단) 결과보고 및 검사 및 해석 상담 지원 10. 2017~2019학년도 검사 및 해석 상담 지원을 위한 검사지 구입	1. 대학은 학생 상담 지원 규정 및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은 학생 상담을 위한 운영체제로 지원인력, 전문성, 근무일지, 2017~2019학년도 운영회의록, 운영계획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등을 확인함 3. 학생 상담 운영실적으로 2017~2019학년도 운영계획서와 자체평가보고서, 오프라인 대학생생활적응검사, 온라인 검사프로그램 및 결과보고 및 해석 상담 지원, 개인, 집단 학생상담 지원, 학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 진로 및 심리지원 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상담소, 열린상담소 등 실적을 확인함 4. 상담심리전공 유자격자 상담원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고, 상담교수, 외부상담원도 순환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11. 2017~2019학년도 학과맞춤형서비스 시행 및 결과보고 12. 2017~2019학년도 진로 및 심리지원 교육 프로그램 시행 및 결과보고 13. 2017~2019학년도 진로 및 심리지원 행사 ‘찾아가는 상담소’ ‘열린상담소’ ‘캠페인’ 시행 및 결과보고 14. 2017~2019학년도 상담센터 홍보 15. 2017~2019학년도 교직원 상담 전문성증진 직무역량강화 실시 및 결과보고 16. 2017~2019학년도 관련부서 연계 지원 사업 17. 2017~2019학년도 멘토링(또래상담)사업 시행 및 결과보고	
5	5.1	5.1.3	5.1.3.1	○				1. 정보공시-장학금 수혜 현황 2. 2017~2019학년도 업무분장표 내부결재, 3. 2017~2019학년도 부서운영계획(학생지원팀) 3. 2017~2019학년도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4. 2017~2019년도 복지설문조사 5. 2017~2019년도 학생복지지원(소리함) 6. 교내 장학금 장학제도 7. 2017, 2018년도 총학생회 복지시설 개선 요청서 8. 2017~2019년도 교양체육실습실 운영 9. 2017~2019년도 해외 어학연수 시행 10. 2017~2019년도 학생봉사단 운영 11. 2017~2019년도 농촌 봉사활동 시행 12. 2017~2019년도 축제, 체육대회, OT진행	1. 교육만족도 조사, 재학생 복지 설문조사, 소리함, 총학생회 등을 통해 학생 복지와 관련한 학생 의견 수렴 과정을 확인함 2. 학생지원팀 부서운영계획서에 업무 분장, 학생복지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가족장학금, 다자녀장학금, 장애인장학금, 다문화가족장학금, 외국인학생 장학금, 직장인면학장학금 등), 교양체육실습실 운영, 해외 어학연수, 학생봉사단 운영, 농촌봉사활동 등의 실적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5	5.1	5.1.3	5.1.3.2	○				1. 보건실 운영지침 2. 간호사 및 교원자격증 3. 2017년, 2018년, 2019년 의약품·소모품 구입 4. 2017년, 2018년, 2019년 의약품·소모품 사용 현황 5. 2017년, 2018년, 2019년 교직원 대상 건강검진 실시(교내) 6. 캠페인(프로그램) 2017년, 2018년, 운영 7. 2017년, 2018년, 2019년 보건실 이용자 만족도조사	1.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실 운영지침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함 2. 보건실은 간호사 및 교원자격증을 구비한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2017~2019 의약품, 소모품, 건강검진 실시 운영실적, 건강관련 캠페인 실적 등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5	5.1	5.1.3	5.1.3.3	○				1. 정보공시 12-다-1 장학금 수혜 현황	1. 대학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정보공시 12-다-1에 근거하여 2016년도 15.3%, 2017년도 16.3%, 2018년도 15.3%로 인증평가 충족 기준인 10% 이상으로 충족 판정함
5	5.1	5.1.4	5.1.4.1	○				1. 학술정보관 운영규정 2. 2018학년도 학술정보관 업무분장 내부결재 3. 사서자격증 및 학위기 사본	1. 도서관의 조직, 운영 및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이용의 제반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대학도서관진흥법의 발전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학술정보관 운영규정을 갖추고 있음 2. 대학 구성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준사서 이상,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을 대학 규모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학술정보관 업무분장 등의 내부결재를 통해 확인함 3. 학술정보관의 전문 인력 및 자격증 보유현황은 1급 정사서 1명과 2급 1명 등 2명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대학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충족(2명 이상)함을 사서자격증과 학위기 등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5	5.1	5.1.4	5.1.4.2	○				1. 2017~2019학년도 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 회의록 2. 대학도서관 2017년도 시행계획 3. 대학도서관 2017년도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시행계획 4. 대학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 5. 2017~2019학년도 학술정보관 부서운영계획서 6. 2017~2019학년도 학술정보관 자체평가보고서 7. 2017~2019학년도 학술정보관 예산요구내역서 8. 2017~2019학년도 학술정보관 예산집행내역서 9. 2017~2019 동남보건대학교 재학생 만족도 조사보고서 도서관 부문 10. 2017~2019학년도 학술정보관 유지보수 협조문 11. 2017학년도 화장실 및 기계설비 리모델링 전기공사 준공 및 공사비 정산보고 12. 2018학년도 학술정보관 서버하드디스크추가설치 협조문 13. 2019학년도 학술정보관 단식 6단 서가 구입 협조문	1. 학술정보관에서는 연차별 사업계획서와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대비 운영실적을 2017~2019학년도 학술정보관 예산집행내역서를 통해 확인함 2. 학술정보관의 공간, 장서, 학습환경 등의 만족도 조사 결과분석, 학술정보관 자체평가결과 및 운영위원회 논의 회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학술정보관 유지보수, 리모델링, 서버, 도서구입과 우수이용자 시상 등 평가 및 개선 실적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14. 2017~2019학년도 도서관입찰 15. 2017~2019학년도 1,2학기 실별우수이용자 시상 16. 2017~2019학년도 학술정보관 전자정보박람회 개최 17.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알림	
5	5.1	5.1.4	5.1.4.3	○				1. 정보공시 13-가. 장서보유 및 도서관 현황	1.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2017년도 40.9천원, 2018년도 34.8천원, 2019년도 22.2천원으로 인증평가 충족 기준인 21.6천원을 초과하고 있음을 대학정보공시 13-가를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5	5.1	5.1.5	5.1.5.1	○				1. 2017~2019년도 부서운영계획서 2.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규정 3.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평가위원회 규정 4. 다문화가족학생 지원 규정 5. 2017~2019년도 장애인 장학금 지급 6. 2017~2019년도 다문화가족 장학금 지급 7. 2017~2019년도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지급 8. 2017~2019년도 장애,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학생 재학현황조사 9. 2017~2019년도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양강좌, 캠페인 실시 및 결과보고 10. 2017년도 장애학생 간담회 및 요구조사 결과보고 11. 2017년도 장애학생 상담 일지 12. 2017년도 장애학생 문자 및 이메일 발송 내역 13. 2018, 2019년도 장애학생 지원 협조문 14. 2017~2019년도 업무분장표 15. 학칙 제21장 제87조, 제 9장 제43조 16.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사진) 17. 2017~2019년도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회의록 문서철 18. 2017년도 다문화가족학생지원특별지원위원회 회의록 문서철	1.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을 위해 학칙,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규정, 교육복지지원 평가위원회 규정, 다문화가족학생지원 규정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양강좌, 캠페인 실시, 장애학생 상담과 장학금 지원, 소수집단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위원회 회의록 등을 통해 확인함 2. 대학은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을 위한 지원조직과 전담인력을 학생지원팀 업무분장표를 통해 확인함 3.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학칙과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규정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함 4. 건물 출입구 경사로 설치, 건물 입구와 엘리베이터 및 화장실, 계단 앞 유도점자블럭 설치, 장애인 주차구역 구비, 건물에 엘리베이터 구비, 장애인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6	6.1	6.1.1	6.1.1.1	○				1. 정관(제6장 교직원) 2. 교원인사규정	1. 대학은 교원(전임, 비전임)의 채용, 재임용, 승진, 해임 등 임면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정관, 교원인사규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3. 교원인사위원회규정 4.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위원회 규정 5. 교수업적평가규정 6. 교직원 포상규정 7. 윤리헌장 규정 8. 명예교수 규정 9. 겸임교원 인사규정 10. 교원명부, 교원인사위원회 위촉내부결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 위촉내부결재 11. 2017~2019학년도 교원 신규임용 관련 자료 12. 2017~2019학년도 교원 승진임용 관련 자료 13. 2017~2019학년도 교원 재임용 관련 자료 14. 2017~2019학년도 교원 해임 관련 자료 15. 2017~2019학년도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위원회 회의록 16. 시간강사 위촉 지침 17. 강사 인사규정 18. 강사 신규임용에 관한 지침 19. 2017~2019학년도 시간강사(강사) 위촉 및 계약 관련서철 20. 2017~2019학년도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시간강사, 강사)	정 등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함 2. 교원 신규채용 시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를 통해 학문적, 실무적 자질을 평가하고 있으며, 심사위원 위촉의 기본원칙에 따라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 신규임용관련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6	6.1	6.1.1	6.1.1.2	○				1. 정관 2. 교원 인사규정 3.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4.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위원회 규정 5. 교원명부, 교원인사위원회 위촉 내부결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위촉 내부결재 6.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위원회 회의록(2017~2019학년도) 7.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시간강사, 강사) (2017~2019학년도)	1. 교원인사위원회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보직자와 비보직자, 직급, 계열, 성별 등을 고려하여 7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교원 임면에 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교원인사위원회,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위원회 규정 및 회의록철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6	6.1	6.1.1	6.1.1.3	○				1. 교수업적평가 규정	1. 대학은 교수업적평가 규정, 교직원 포상 규정 등 교원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2. 교직원 포상규정 3. 교수업적평가 시행 관련 자료(2017~2019학년도) 4. 교수업적평가 결과 보고(2017~2019학년도) 5. 교수업적평가 우수자 포상(2017~2019학년도)	평가에 대한 규정을 보유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은 교원의 자질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활동, 학생지도, 연구활동, 봉사활동, 산학협동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매년 공정하고 투명한 교수업적평가를 시행하고 있음을 교수업적평가 시행관련 자료 및 결과보고철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6	6.1	6.1.2	6.1.2.1	○				1. 대학정보공시(2017,2018,2019), 6-가 전임교원대비 전임교원현황 2. 대학정보공시 (2017,2018,2019)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1. 정보공시 6-가, 나를 확인한 결과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재학생 기준 2017년 56.7%(편제기준 64.9%), 2018년 55.0%(편제기준 63%), 2019년 53.1%(편제기준 60.1%)로 인증평가 기준인 50%이상이므로 충족 판정함
6	6.1	6.1.3	6.1.3.1	○				1. 대학정보공시(2016,2017,2018), 7-가. 정보공시자료 전임교원 연구실적	1.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은 2016년 0.50건, 2017년 0.48건, 2018년 0.40건으로 인증평가 충족 기준인 0.2건 이상의 연구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정보공시를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6	6.1	6.1.3	6.1.3.2	○				1. 학술연구소운영규정 2. 교수업적평가규정 3. 전임교원 연구년제 규정 4. 연구비중앙관리규정 5. 연구용기기운용규정 6. 연구윤리규정 7. 기관생명윤리규정 8. 연구노트 작성·관리규정 9. 산학협력단 정관 10. 연구소 논문집 제작비 지급(2017~2019년도) 11. 연구윤리교육 결과보고 및 경비정산(2017~2019년도) 1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 연장(2017~2019년도) 13.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위촉 14. 연구비 신청 지급(2017~2019년도) 15. 정보공시자료 연구비수혜실적(2017~2019년도) 16. 동남보건대학교 논문집(2017~2019년도)	1. 대학은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연구비중앙관리 규정 등 관련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대학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창작 등의 활동을 위해 2017년 26건 과제에 64,500천원, 2018년 31건 과제에 65,000천원, 2019년 25건 과제에 52,500천원을 지원하여 교원이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적 여건을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6	6.1	6.1.4	6.1.4.1	○				1. 전임교원 연구년제 규정	1. 대학은 전임교원 연구년제 규정, 교원 현장연수 규정,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2. 교원 현장연수 규정 3. 교원 파견 규정 4. 2017~2019학년도 연구년제 신청 공지 안내: 학과장 회의 자료 5. 2017~2019학년도 전임교원 연구년제 내부결재 6. 연구년제 해당기간동안 급여대장	교원 파견 규정 등 교원 역량계발 관련규정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은 교원 역량계발을 위하여 16주 이상의 교원 연구년제를 실시하고 2017학년도 2학기 1명, 2018학년도 2명, 2019학년도 2명의 연구년제 추진 실적이 있으며, 매 학기 산업체 현장연수는 2017학년도 111건(12,740천원), 2018학년도 114건(13,500천원), 2019학년도 99건(12,160천원) 지원실적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6	6.1	6.1.4	6.1.4.2	○				1. 2017~2019학년도 교수능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현황 2. 2017~2019학년도 신입교원 연수 시행 3. 2017~2019학년도 산업체 현장연수 시행 및 결과 4. 2017~2019학년도 협회비 및 간호학과 교수개발비 5. 2017~2019학년도 교직원 연수 경비 정산보고	1. 대학은 교원의 역량 계발 지원을 위해 교직원연수, 교원산업체연수, 신입교원연수, 교수능력 향상 프로그램, 전공 관련 연수 등의 다양한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교수능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현황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6	6.2	6.2.1	6.2.1.1	○				1. 정관 2. 직원인사규정 3. 취업규칙 4. 계약직원 등 인사 및 복무규정 5. 수습직원 관리 및 운영지침 6. 직원근무평정규정 7. 직원근무평정심의위원회 규정 8. 일반직징계위원회규정 9. 사무분장규정 10. 위임전결규정 11. 2017~2019학년도 신규직원 채용 관련 자료 12. 2019학년도 무기계약직원 전환 자료 13. 부서별 업무분장표 14. 2017~2019학년도 직원 근무평정 관련 자료 15. 2017~2019학년도 직원 퇴직 관련 자료 16. 2017~2019학년도 직원인사위원회 회의록	1. 대학은 직원의 임용(채용, 승진, 인사평가 및 보상, 해임)과 관련하여 정관, 직원인사규정, 취업규칙, 직원근무평정규정 등 직원 인사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을 대학홈페이지 대학안내(규정및 지침)에 공지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은 직원의 채용, 승진, 인사평가 및 보상, 해임 등의 인적관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채용공고, 채용절차, 승진 및 해임절차 등 규정에 의하여 공정하게 직원인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신규직원 채용 관련 자료 및 직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으로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6	6.2	6.2.2	6.2.2.1	○				1. 교직원 복지 및 직무역량개발지원 규정 2. 직원 근무평정 규정 3. 직무 역량계발 관련 행.재정적 지원 현황	1. 대학은 직원의 직무역량 계발에 관한 기본사항을 교직원 복지 및 직무역량개발지원 규정 및 직원 근무평정 규정에 명시하고, 관련규정을 대학홈페이지 대학안내(규정및 지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4. 직원 직무 역량개발 교육 참여 실적 현황 5. 2017~2019학년도 직무 역량개발 교육 참여(지원) 실적 내부결재 6. 연수 이수증 첨부(통합정보시스템) 7. 2017~2019학년도 직원 근무평정 결과보고 내부결재	침)에 공지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은 직원의 직무 역량개발을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진행한 직무교육, 전문대학 직무별 협의회 참석 등 직원의 직무역량 개발 연수 참여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직무능력 개발 및 교육훈련 참여 확대를 위하여 연수 및 교육 등 이수 실적에 대해 평정점수에 반영하여 업무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6	6.3	6.3.1	6.3.1.1	○				1. 2016~2018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서 2. 2018학년도 교원 개인별 연봉 현황표 3. 교직원 급여현황	1. 대학의 등록금 대비 교원 인건비 비율은 2016학년도 41.9%, 2017학년도 42.6%, 2018학년도 40.6%로 인증평가 충족 기준인 30%를 초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6	6.3	6.3.1	6.3.1.2	○				1. 2016~2018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서 2. 2018학년도 직원 개인별 연봉 현황표 3. 교직원 급여현황	1. 대학의 등록금 대비 직원 인건비 비율은 2016학년도 16.1%, 2017학년도 16.1%, 2018학년도 16.0%로 인증원 충족 기준인 11%를 초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6	6.3	6.3.1	6.3.1.3	○				1. 교직원보수규정 제18조~제20조 2. 교직원 국내출장 및 여비지급 규정 3. 교직원 포상 규정 4. 명예퇴직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5. 취업규칙 6. 교직원 복지 및 직무역량개발 지원 규정 7.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현황	1. 대학은 교직원 복지와 관련하여 교직원보수규정, 교직원 국내출장 및 여비규정, 교직원 포상규정 등 다양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규정을 대학홈페이지 대학안내(규정및 지침)에 공지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은 해당 규정에 따라 학비보조수당, 교직원 자녀 장학금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7학년도 1,222,143천원, 2018학년도 350,215천원, 2019학년도 328,636천원의 행·재정적 지원 현황을 확인하였으므로 충족 판정함
7	7.1	7.1.1	7.1.1.1	○				1. 정보공시 8-라. 예·결산 현황 2. 정보공시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3. 2016, 2018, 2019학년도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대학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포함) 4. 2017~2019학년도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연차평가 결과 보고 내부결재 5. 2016~2018학년도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및 개선조치	1.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전략과제별 재정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실행과제별 예산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연차평가를 통해 매년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집행 실적을 분석하여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있음을 「2016, 2018, 2019학년도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및 「2017~2019학년도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연차평가 결과 보고 내부결재」를 통해 확인함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홈페이지 공개 내부결재 6. 2017-2019학년도 부서별 운영계획서 7. 2017-2019학년도 법인 및 대학 예산 편성 및 운용지침 8. 2017-2019학년도 부서, 학과 예산요구서 및 부서 사업계획서 9. 2017-2019학년도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0. 2017-2019학년도 대학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11. 2017-2019학년도 이사회 회의록 12. 2017-2019학년도 예·결산 통보, 제출 및 공개 공문 13. 2019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사전 수요조사 시행 내부결재(2019.09.30.) 14. 재무회계 규정, 제6조, 제15조	2.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위해 2016-2018학년도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조치를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2017~2019학년도 부서별 운영계획서」 및 「2017-2019학년도 부서, 학과 예산요구서 및 부서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대학평의위원회, 대학등록금 심의위원회, 이사회를 거쳐 구성원 의견이 반영된 예산안을 확정하고 있음을 「2017~2019학년도 관련 위원회(대학평의위원회,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7	7.1	7.1.1	7.1.1.2	○				1. 정보공시 9-가. 등록금 산정근거 2. 2017-2019학년도 법인 및 대학 예산 편성 및 운용지침 3. 2017-2019학년도 부서, 학과 예산요구서 및 부서 사업계획서 4. 2017-2019학년도 결산 회계감사 시행 및 일정보고 5. 2017-2019학년도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6. 2017-2019학년도 대학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7. 2017-2019학년도 이사회 회의록 8. 2017-2019학년도 예·결산 통보, 제출 및 공개 공문 9. 2019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사전 수요조사 시행 내부결재(2019.09.30.) 10. 사무분장규정, 제4조, 제13조 11. 예산 규정, 제14조 12. 재무회계 규정, 제6조, 제15조	1. 대학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예산계획이 수립·변경되었음을 「2017~2018학년도 법인 및 대학예산 편성 및 운용지침」 및 「2017~2018학년도 대학평의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이사회 등 관련위원회 회의록」과 「2017-2019학년도 예·결산 통보, 제출 및 공개 공문」을 통해 확인하였고,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산이 진행되고 있음을 「2017-2019학년도 결산 회계감사 시행 및 일정보고」과 「2017-2019학년도 예·결산 통보, 제출 및 공개 공문」을 통해 확인함 2. 대학은 본예산 및 추경예산, 결산자료를 「대학정보공시」 및 대학 홈페이지 「예·결산 공고」 게시판을 통해 1년 이상 공시하고 있음을 「2017-2019학년도 예·결산 통보, 제출 및 공개 공문」과 대학홈페이지 「예·결산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함 3. 대학은 「재무회계규정」, 「사부분장규정」, 「예산규정」을 정비하여 예산의 수립과 통제에 관한 업무는 기획조정처 전략운영팀, 예산 집행에 관한 업무는 사무처 회계재무팀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을 분리하고 있으며, 적절한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내부통제의 조항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7	7.1	7.1.2	7.1.2.1	○				1. 정보공시 14-바,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2.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학 수익사업의 다변화 방안 연구에 대한 결과 보고 내부결재 3. 대학발전기금관리규정 4. 대학발전기금 우수사례 검토 보고 내부결재 5. 대학발전기금 홍보 및 유치 활성화 계획(안) 시행 내부결재 6. 발전기금 기부자 및 기부내역 안내 계획(안) 시행 내부결재 7. 2017-2019학년도 발전기금 기부목록 8. 2017-2019학년도 발전기금 모금행사 결과보고 내부결재 9. 2017-2019학년도 발전기금 기부약정서_현금 및 현물 10. 2017-2019학년도 연도별 단기수강료 수입 현황 11. 시설물관리규정 12. 2017-2019학년도 연도별 대관 현황 보고 13. 2017-2019학년도 사업별 사업교부금 관련 공문 및 내부결재 14. 2017-2019학년도 산학협력단 대학 전출금 지출 결의서 15. 2017-2019학년도 보조금 수입 내역 16. 2017-2019학년도 법인 전입금 수입 결의서 및 공문	1. 대학 발전기금 활성화, 대학 시설물에 대한 대여 사용료 수입 확대, 산학협력단을 통한 대외 사업 활성화, 국고 보조금 등을 통한 재학생 장학혜택 증진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교부를 통한 교육 활동 전개, 법인의 경상비 및 법정부담전입금과 산학협력단 전입금 확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대학발전기금관리규정」, 「시설물관리규정」 및 「2017~2018 학년도 사업별 수입 관련 내부결재 및 결산서」,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대학 수익사업 다변화 방안 연구(2019.12.26.) 및 발전기금 유치 활성화 계획(2017.03.03.)」 등을 통해 확인함 2. 대학은 등록금 외 다양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7학년도 17,601,074천원, 2018학년도 18,716,955천원, 2019학년도 18,941,260천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을 「2017-2019학년도 발전기금 기부목록」, 「2017-2019학년도 연도별 단기수강료 수입 현황」, 「2017-2019학년도 연도별 대관 현황 보고」, 「2017-2019학년도 사업별 사업교부금 관련 공문 및 내부결재」, 「2017-2019학년도 산학협력단 대학 전출금 지출 결의서」, 「2017-2019학년도 보조금 수입 내역」, 「2017-2019학년도 법인 전입금 수입 결의서 및 공문」 등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7	7.1	7.1.2	7.1.2.2	○				1.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2. 8-자.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3. 9-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4. 2016-2018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서 5. 2016-2018학년도 산학협력단 결산서 6. 교육비 환원을 산출근거(산출식)	1. 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은 2016학년도 120.5%, 2017학년도 121.9%, 2018학년도 121.1%로 인증평가 충족기준인 100%이상으로 충족하고 있음을 정보공시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8-자.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9-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및 제출자료인 「교육비 환원을 산출근거」를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7	7.2	7.2.1	7.2.1.1	○				1. 예산 규정 및 재무회계 규정 2. 2017-2019학년도 학기별 예산 집행실적 보고 및 예산심의위원회 회의록(2018학년도 본예산부터 적용)	1. 대학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3, 4항과 대학 예산규정 제1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7조(예산의 전용), 재무회계규정 제16조(예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3. 2018, 2019학년도 예산전용 보고 (2017학년도 예산 전용 無) 4. 2019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사전 수요조사 시행 내부결재(2019.09.30.) 5. 2017-2019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실시 내부결재 6. 2017-2019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7. 2017-2019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이사회 회의록 8. 2017-2019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통보, 제출 및 공개 공문	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7조(예산의 전용)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을 「예산 규정 및 재무회계 규정」을 통해 확인했고, 목간 전용 이상의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음을 「2017-2019학년도 예산전용 보고 (2017학년도 예산전용 無)」를 통해 확인하였고, 예산집행의 지속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 18조(추가경정예산)의 사항을 대학 예산규정 제12조(추가경정예산) 및 재무회계규정 제13조(추가경정예산)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것을 「예산 규정 및 재무회계 규정」과, 「2017-2019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실시 내부결재」, 「2017-2019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2017-2019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이사회 회의록」, 「2017-2019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통보, 제출 및 공개 공문」의 공문 및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7	7.2	7.2.1	7.2.1.2	○				1. 정보공시 8-라. 예·결산(합산재무제표) 현황 2. 정보공시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3. 정보공시 8-사. 적립금 현황 4. 기금심의위원회 규정 및 회의록 5. 현금 및 예금명세표, 적립금의 적립·사용명세서 6. 미사용 이월자금 내역 및 사용계획명세서 7. 2017-2019학년도 결산서 8. 2017-2019학년도 잉여금 처리원칙에 대한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1. 대학의 적립금은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수하여 적립하고 있으며, 「재무회계규정」상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항을 통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심의하고 있음을 「기금심의위원회 규정 및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적립된 기금은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비등록금회계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용 방침에 따라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음을 「현금 및 예금명세표, 적립금의 적립 사용 명세서」를 통해 확인함 2. 대학의 이월금은 교육부 사립(전문)대학 이월금 처리기준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타이월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타 이월금이 결산시 2017학년도 1.4%, 2018학년도 1.0%, 2019학년도 1.0%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미사용 이월자금 내역 및 사용계획서」로 확인하였고, 최종 추경예산 편성시 불용예산을 삭감하고 부득이 발행하는 이월금에 대해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대학평의원회 자문,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홈페이지를 통해 「미사용 이월자금 내역 및 사용계획 명세서」를 공개하고 있음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함 3.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년 잉여금 처리원칙에 대하여 안건으로 상정 후 활용방안을 심의하여 등록금 회계의 잉여금을 직접 교육비로 활용하기로 심의한 내용을 「2017-2019학년도 잉여금 처리원칙에 대한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였고, 직전년도 회계 결산을 통해 사전에 정한 용도로 다음 회계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2017-2019학년도 결산서」 및 「2017~2019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통보, 제출 및 공개 공문」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7	7.2	7.2.1	7.2.1.3	○				1. 예산 규정 및 재무회계 규정 2. 2017-2019학년도 학기별 예산 집행실적 보고 및 예산심의위원회 회의록(2018학년도 본예산부터 적용) 3. 2019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사전 수요조사 시행 내부결재(2019.09.30.)	1. 대학은 예산규정 제15조(예산집행의 평가)에 근거하여 예산주관부서에서 집행 내역을 평가하던 체계에서 「재무회계규정」을 제정하면서 동규정 제10조(예산심의위원회)에 의거한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집행 내역을 평가하는 체계로 개선하였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을 재편성하는 추가경정 예산을 시행한 내용을 「2017-2019학년도 학기별 예산 집행실적 보고 및 예산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였고, 2019학년도에는 교비회계 추가경정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한 것을 「2019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사전 수요조사 시행 내부결재」를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7	7.2	7.2.1	7.2.1.4	○				1. 법인 정관 2. 2016-2018 학교교비 결산 회계감사 시행 내부결재 3. 2016-2018 대학 내부감사보고서 4. 2016-2018 대학 외부감사보고서 5. 2016-2018 결산서 제출 내부결재 및 공문 6. 산학협력단 정관 7. 2016-2018 산학협력단 내부감사 보고서	1. 대학은 「법인 정관」을 통해 감사의 임기와 직무 등을 명시하여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공인회계사가 포함한 법인감사 2인으로부터 결산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2016-2018 학교교비 결산 회계감사 시행 내부결재」를 통해 확인하였고, 사립학교법 제31조 제4항 및 재무회계규정 제38조에 따라 내부감사 이외에 학교법인과 독립한 회계 법인에 의해 외부회계감사를 수검 받고 있음을 「재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8. 2016-2018 산학협력단 외부감사 보고서 9. 2016-2018 산학협력단 결산서 제출 공문	무회계규정」 및 「2016-2018 대학 내외부감사보고서」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결산서와 함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음을 「2016-2018 결산서 제출 내부결재 및 공문」을 통해 확인함. 또한,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 정관」에 감사의 임기 직무를 명시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감사)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7조(감사)에 의해 산학협력단의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결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관할청에 결산서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산학협력단 정관」, 「2016-2018 산학협력단 내외부감사 보고서」, 「2016-2018 산학협력단 결산서 제출 공문」 등을 통해 확인함 2. 대학 및 산학협력단은 「법인 정관」, 「산학협력단 정관」 및 대학 「재무회계규정」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고, 내외부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전부를 감사 대상 학년도의 결산서와 함께 이사회 및 관할청에 보고하고, 대학 홈페이지 <예·결산공고> 부분에 자료를 탑재하여 감사결과를 내부 구성원 및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7	7.3	7.3.1	7.3.1.1	○				1. 정보공시 14-라, 교사확보율 2. 2017, 2018, 2019학년도 시설현황집계표	1. 대학의 법정 교사확보율은 2017학년도 134.0%, 2018학년도 132.0%, 2019학년도 138.0%로 인증평가 충족기준 100%이상으로 충족하고 있음을 정보공시 및 2017~2019 시설현황집계표를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7	7.3	7.3.1	7.3.1.2	○				1. 시설물 관리규정 2. 안전관리규정 3. 전기 안전관리규정 4.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5. 시설물 관리대장 6. 보안업무일지 7. 2017, 2018, 2019학년도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고 교육부 공문 8. 2018, 2019학년도 전기설비안전진단보고서	1. 대학은 교육시설 관리를 위한 규정 「시설물관리규정」, 「안전관리규정」, 「전기관리규정」, 「연구실안전관리 규정」을 보유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동 규정을 통해 확인함 2. 대학은 교육시설 관리를 위한 규정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시설물관리대장」, 「보안업무일지」, 「시설물안전점검 결과 보고」 및 「분야별 정밀 점검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육시설을 유지보수, 개선 등을 진행하여 주기적인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9. 2017, 2018, 2019학년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보고서 10. 2017, 2018, 2019학년도 작동기능점검 보고서 11. 2017, 2018, 2019학년도 연구·실험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12. 2017, 2018, 2019학년도 시설물 개선 실적	점검과 개선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을 「2017~2019학년도 시설물 개선 실적시설물 개선 실적」 관련 내부결재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함 3. 대학은 「시설물 관리규정」, 「안전관리규정」, 「전기 안전관리규정」,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등의 안전관리 규정을 구비하고 대학의 모든 시설물을 건축, 전기, 소방 연구실 등으로 구분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을 「2017, 2018, 2019학년도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고 교육부 공문」, 「2018, 2019학년도 전기설비안전진단보고서」, 「2017, 2018, 2019학년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보고서」, 「2017, 2018, 2019학년도 작동기능점검 보고서」, 「2017, 2018, 2019학년도 연구·실험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7	7.3	7.3.1	7.3.1.3	○				1. 실험실습 기자재 도입 및 관리 운영 규정, pp.1. 2. 실험실습 기자재 폐기 처리 규정, pp.1. 3. 실험실습실 운영 규정, pp.1. 3. 통합정보시스템 자산시스템 보고서(기자재 관리대장-방사선과) 4. 2017, 2018, 2019학년도 실험실습 기자재 신청서 5. 2017, 2018, 2019학년도 실험실습 기자재선정위원회 회의록 6. 2017, 2018, 2019학년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내역 7. 통합정보시스템 자산시스템 보고서(기자재 수리내역)	1. 대학은 실험실습기자재의 도입과 관리를 위해 「실험실습 기자재 도입 및 관리 운영 규정」을 구비하고, 불용처리과정을 정의하는 「실험실습 기자재 폐기 처리 규정」, 「실험실습실 운영 규정」 등을 보유하고 실험실습 기자재의 신청, 유지, 관리, 개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해당 규정을 통해 확인함. 2. 대학은 보유한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자재에 대한 신청, 유지, 관리, 개선을 이행하고 있음을 대학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내 「자산관리 시스템」 및 「통합정보시스템 자산시스템 보고서(기자재 관리대장-방사선과), (기자재 수리내역)」과 「2017, 2018, 2019학년도 실험실습 기자재 신청서」, 「2017, 2018, 2019학년도 실험실습 기자재선정위원회 회의록」, 「2017, 2018, 2019학년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내역」을 통해 확인하였고, 통합정보시스템 및 바코드를 통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 3. 대학은 실험실습 기자재 신청을 받고 있음을 「2017, 2018, 2019학년도 실험실습 기자재 신청서」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한 실험실습기자재에 대해 기자재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하고 있는 것을 「2017, 2018, 2019학년도 실험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실습 기자재선정위원회 회의록」 및 「2017, 2018, 2019학년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내역」를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7	7.3	7.3.2	7.3.2.1	○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2. 보안업무규정 3. 개인정보 처리방침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지침 5. 문서관리 및 보존지침 6. 정보보안 기본지침 7. 침해사고 대응지침 8. 2017, 2018, 2019학년도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내부결재 9.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이력 및 공표 이력 10. 2017, 2018, 2019학년도 보안 진단 점검 결과 보고 내부결재 11. 2017, 2018, 2019학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실시결과 보고 내부결재 12. 2017, 2018, 2019학년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결과 보고 내부결재 13. 2017, 2018, 2019학년도 개인정보처리 위탁업체 교육 실시결과 보고 내부결재 14. 전산장비(백업시스템 외 2종) 구축 계약 15. 백업 소프트웨어 구입 계약 16. 백업솔루션 유지보수 계약 17. 서버 보안 유지보수 계약 18. 웹 방화벽 구입 계약 19. 네트워크 방화벽 구입 계약 20. OTP 솔루션 구축 계약 21. 2017, 2018, 2019학년도 회의록 보안업무 추진계획 22. 2017, 2018, 2019학년도 회의록 보안업무 수행실적 종합평가	1. 대학은 대학 구성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보안업무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문서관리 및 보존지침」, 「정보보안 기본지침」, 「침해사고 대응지침」 등 규정 및 지침을 갖추고 있으며, 「2017~2019 학년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제도적 기본을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통해 구축 운영되고 있음을 동 규정 및 「2017, 2018, 2019학년도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내부결재」,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이력 및 공표 이력」을 통해 확인하였고, 내부 구성원 및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2017, 2018, 2019학년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결과 보고 내부결재」, 「2017, 2018, 2019학년도 개인정보처리 위탁업체 교육 실시결과 보고 내부결재」를 통해 확인함 3. 대학은 교내 문서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등을 기록하지 않도록 「문서관리 및 보존지침」을 통해 규정화 하였고, 「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 기본지침」, 「침해사고 대응지침」 등 규정을 준수하여 백업서버를 전산정보센터와 분리된 장소에 설치하여 화재 등으로부터 행정 기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산장비 구축 계약」, 「백업소프트웨어 구입 계약」, 「백업솔루션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백업시스템을 구축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웹 방화벽 구입 계약」, 「네트워크 방화벽 구입 계약」, 「OTP 솔루션 구축계약」 등을 통해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개인정보접속기록시스템, DB접근제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해킹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음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 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이유
								23. 2017, 2018, 2019학년도 사립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분석 결과 보고서 24. 2017, 2018, 2019학년도 사립대 정보보안 수준진단 분석 결과 보고서	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제Ⅳ장 자체평가 활용계획

1. 우수사례 및 개선·보완사항

1) 우수사례

- 정량적정성 평가요소(필수정량지표 포함) 12개 모두 기준을 충족함

2) 개선·보완사항

- 해당 없음

2. 결과활용 계획

1)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 자체평가결과 제출

- 2020년도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 자료로 제출하고 각종 대내·외 평가의 자체 점검 자료로 활용

2) 자체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시

- 대학 홈페이지를 통한 평가 결과를 공시하여 학생, 학부모, 기관, 산업체 등 수요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학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교육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

3) 정책 수립에 반영

- 대학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수립, 차기년도 사업예산의 효과적인 배분에 활용함과 더불어 대학경영 개선, 교육인프라 확충 등 대학 정책 수립에 활용

4)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개선을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

- 평가결과를 각 담당부서에 배포하여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에 활용